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2023. 10. 30



보건복지부

목 차

I. 종합운영계획 수립 배경	1
II. 노후소득보장 현황	3
III. 국민연금 개혁경과 및 시사점	11
IV. 국민연금 개혁방향	26
V.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제	28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8
2.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41
3. 재정안정화	47
4. 기금운용 개선	54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60
VI. 향후 추진계획	64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I

종합운영계획 수립배경

-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35년의 역사를 지닌 공적연금 제도로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
 - 18~59세의 약 73%가 가입 중('22.12월)으로, 노후준비에 필수적인 제도*
 - *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 86%(한국리서치, 천명 대상, '22.8월)
- 한편 인구·경제구조, 고용시장, 부양의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초고령화·초저출산 사회, 저성장 경제, 고용형태 다변화, 세대 간 연대 약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적 개편을 요구
 - 그간 2차례 개혁('98년, '07년) 있었으나,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 인하 조정에 그쳐 국민 신뢰 저조*
 - * 20~30대 중 미래 연금수령을 신뢰하는 비율은 30% 미만(한국리서치, '22.8월)
- 국민연금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
 - 한국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경험한 해외 주요국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 추진
 - * 스웨덴 1998년 개혁[14년 소요], 영국 2014년 개혁[12년 소요], 일본 2012년 개혁[8년 소요]
 - 미래의 인구·경제여건, 고용시장,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필요

◆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추진

[제5차 재정계산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근거]

- (경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재정계산* 제도 도입

* 제1차 2003년, 제2차 2008년, 제3차 2013년, 제4차 2018년

- (근거) 국민연금법 제4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
-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절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승인된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구분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층	개인연금 (235만 명, 7.6%) ※ 세제적격 연금저축, '21.12		
2층		퇴직연금 (684만 명, 22.3%) ※ '21.12.	직역연금(181만 명, 5.9%)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층	국민연금 (2,250만 명, 73.3%)		
0층	기초연금 (624만 명)		

* 괄호는 18~59세 인구 대비 가입자 수 비율, 기초연금은 수급자 수를 표기('22.12월 기준)

- (국민연금) '88년에 도입되어 '99년에 쉰 국민 의무가입제도로 확대, 18~59세 인구의 73%인 2,250만명 가입 중('22.12월)
 - (부담-기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8년~, 평균소득자 40년 가입 시),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
 - * 소득비례급여(본인의 생애평균소득으로 산정)+소득재분배 급여(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산정)
 - (적립기금) 973.9조원('23.5월), 누적 수익률 5.41%('88~'23.5월)
 - * '88년 5,279억원 → '03년 100조 → '10년 300조 → '22년 890조원(연평균 38.9% 증가)
- (기초연금) '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후 '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 노인의 하위 70%('22년 624만명)에 지급, 기준연금액은 323만원*('23년)
 - * 평균소득자('23년 286만원) 기준 약 11.3%의 소득대체율 보장 효과
- (퇴직연금) '05년 도입, 기여율 약 8.33%(사업주 전액 부담)로 운영, 가입 대상 근로자의 53.3% 가입('21.12)
- (개인연금) '94년 도입, 18~59세 인구의 7.6% 가입(근로자 기준 12.1%)
 - * 국세통계연보상 근로소득이 파악되는 근로자 대상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가입률

◆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은 갖추고 있으나, 국민·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운영, 사적연금은 보완적 기능 수행

2. 노후소득보장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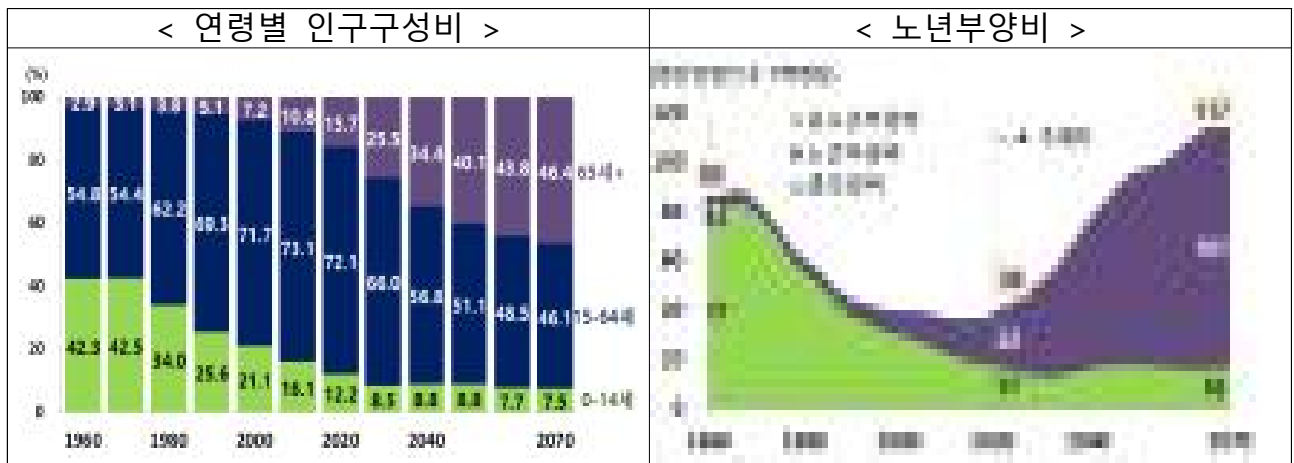
① 인구·경제적 여건

- (인구여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대비 현재 노인비율은 약 4배, 기대여명은 13.6세 증가, 합계 출산율은 절반*으로 감소,

* (1988년 → 2023년) 노인비율 4.7% → 18.4% 기대여명 70.7세 → 84.3세 출산율 1.55명 → 0.73명

- 2070년부터 노인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아지는 구조로 전환

* 노년부양비 : 1988년 6.6% → 2023년 14.3% → 2070년 101%



- (경제여건) 1988년 제도 도입 대비 현재 경제성장률은 약 1/10, 1998년(1차 개혁) 대비 금리는 약 1/4*로 감소

* ▲(1988년 → 2023년) 경제성장률 12% → 1.6%, ▲(1998년 → 2023년) 금리 5.8% → 1.4%

-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기금운용 불확실성 가중 전망
- 208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는 현재의 약 40% 수준, 경제성장률 0%대, 금리 1%대*의 저성장 장기화 예상

* (2023년 → 2080년) 생산가능인구 36백만명 → 14백만명 경제성장률 1.6% → 0.2% 금리 1.4% → 1.2%

◆ 안정적인 인구·경제구조에서 초고령화·초저출산·저성장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민연금 재정구조에 대한 부담 야기

② 고용 여건

- (노동시장 변화) 비임금 근로자 증가*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양극화** 존재

* 플랫폼 종사자·특수고용직 등 비임금근로자 : ('16) 515만 명 → ('20) 704만 명 [국세청, '20]

** 시간당 임금 총액 : ▲대기업(정규직 3.8만원 비정규직 2.5만원), ▲중소기업(정규직 2.2만원 비정규직 1.7만원) [고용노동부 '22]

- (청년고용)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고*, 핵심 노동인구(ILO 기준 25~54세)의 고용률**이 낮은 편

* 청년취업자의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 대졸이상 11개월 전문대졸 13개월 고졸이하 35개월('21) [한국고용정보원 '21]

** 한국의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은 75.2%, OECD(평균 77.3%) 36개국 중 29위 [한국경제연구원 '22]

- (고령자 고용) 65세 이상 고용률은 34.1%('20)로 OECD 평균 14.7%('20) 대비 높은 수준*이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상황

* 65세 고용률('20) : 한국 34.1%, 일본 25.1%, 미국 18%, 캐나다 13%, 영국 11% [OECD, '20]

** 상용근로자 3.3%('11)→18.4%('20), 임시·일용직근로자 18.7%('11)→36.4%('20) [보건복지부, '20]

③ 사회·문화적 여건

- (가족구조 다양화) 혼인을 감소 및 만혼화 경향*으로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증가**

* 혼인건수 ('10) 326천 건→('22) 192천 건 초혼연령 ('10) 남 31.8세 → ('22) 남 33.7세 [통계청, '22]

** 1인 가구 비율 9.0%(1990)→31.7%(2020), 1세대 가구 비율 10.7%(1990)→18.6%(2020) [통계청, '20]

-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 약화*, 국가 및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확대

* '부모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 : ('02) 70.7% → ('22) 19.7% [통계청, '22]

- (중장년층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은 노부모와 (손)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부양* 직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추세**

* 중장년층의 부양 상황: 이중부양 66%, 단일부양 30%, 피부양자 없음 5% [한국리서치 '22]

**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고령층 비율 추이: 46.3%('02) → 71.7%('22) [통계청, '22]

◆ 전통적인 고용·가족관계가 아닌 비정형 근로 및 1인 가구 확산, 세대 간 연대 약화로 국민연금 가입·급여체계의 변화 필요

④ 노인의 소득 여건

- (노인의 소득수준) 노인의 중위소득은 전체인구 대비 빠르게 상승,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 전체인구와 노인의 중위소득 추이 >

구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증가율 (‘13. → ‘21.)
전체	195.3만원	204만원	220.7만원	239.6만원	264.3만원	35.3%
노인	91.5만원	102.2만원	130.2만원	141.6만원	166.8만원	82.3%

-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 간 격차도 완화*

* '13년 : 전체 18.4% vs 노인 46.3% → '21년 : 전체 15.1% vs 노인 37.6%

- 다만, 노인빈곤율은 아직 OECD(평균 13.1%, '18) 최고 수준이며,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노인빈곤율 추이 >

구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65세 이상	46.3%	43.2%	42.3%	41.4%	37.6%
66~75세	42.5%	37.5%	35.6%	33.7%	30.5%
76세 이상	55.7%	54.5%	56.2%	55.6%	51.4%

- (소득 양극화) 노인 간 소득격차는 높은 수준으로(하위10% 60만원 VS 상위10% 669만원), 공적연금과 사적소득 차이에 기인

- 저소득층 노인은 연금소득과 사적소득이 모두 낮은 수준, 고소득층 노인은 연금소득과 사적소득이 모두 높은 특성

< 노인의 소득분위별 소득구성('20년 기준) >

구분	총소득	국민연금+기초연금	근로·사업·재산소득	기타
노인 하위 10%	60만원	31만원(52%)	8만원(13%)	21만원(35%)
노인 상위 10%	669만원	84만원(12.5%)	565만원(84.5%)	20만원(3%)

◆ 노인의 소득여건은 개선된 반면, 노인 빈곤율과 양극화 심각
 ⇒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보장방식으로 개편 필요

3.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 필요성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우려

- (수지 불균형 심화) 기여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불균형 구조에서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감소*하여, 수지불균형이 더욱 악화

* 제도부양비(수급자수/가입자수) : '23년 24% → '50년 95.6% → '70년 138.3%

- (적립기금전망) 기금적립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2055년에 기금 소진 예상(제5차 재정계산 결과)

* 기금적립금(조원) : ('23) 950 → ('40) 1,755 → ('50) 1,027 → ('55) 소진

< 재정전망 >

구 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2040년(1,755조 원)	2041년	2055년(△47조 원)
4차 재정계산	2041년(1,778조 원)	2042년	2057년(△124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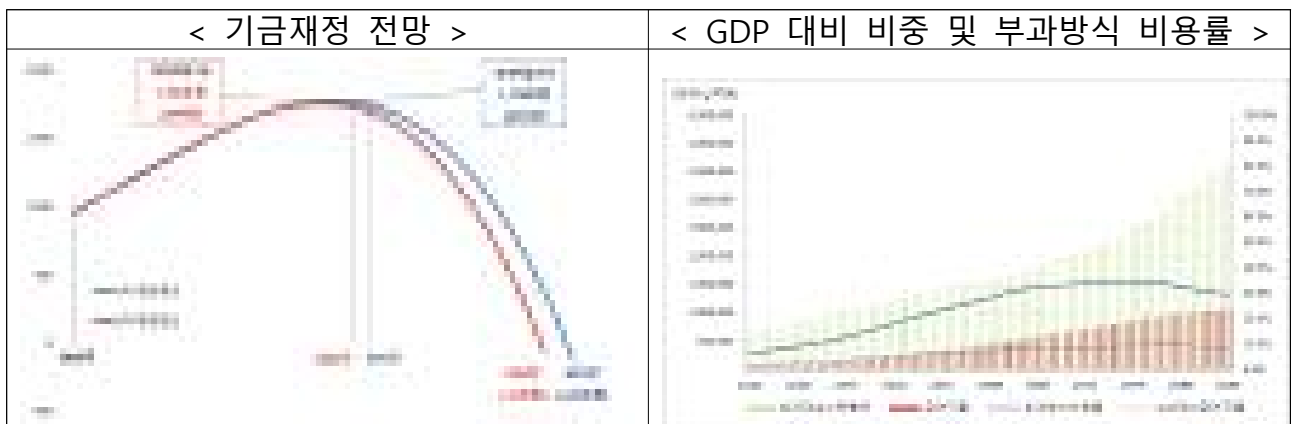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 ()값은 적립기금 규모

- 2041년 이후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매각 필요, 적극적 기금운용 곤란

- (보험료 부담 증가) 향후 급여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급증*, 전체 사회보험료** 고려 시 국민 부담 대폭 확대

* 부과방식비용률(보험료만으로 급여충당 시) : '30년 9.2% → '50년 22.7% → '70년 33.4%

** 5대 사회보험료('23년) : 약 19.6~23%(국민 9%+고용 2.05~2.65%+건보 7.09%+장기요양 약 0.91%+산재 0.5%~3.4%)



□ **국민연금 보장수준 개선에도 사각지대 존재**

- (보장수준) 국민연금 보장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 다만, 고용 시장 불안 등으로 실질 가입기간은 40년(제도설계)에 비해 짧은 상황

< 신규수급자 보장수준 현황 및 전망 >

신규수급자	2022년	2030년	2050년	2070년
평균 연금액	68.5만원	88.8만원	126.7만원	192만원
평균 가입기간	19.3년	20.3년	24.3년	27.6년
수급률(전체 노인 대비)	41.9%	51.9%	75%	84.2%

※ 평균 연금액 전망('30년~) : '23년 불변가 기준

- (사각지대) 국민연금 가입자 **2,250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85만명이며, 그 중 **394만명(57.5%)***은 납부예외, 장기체납 상태('22.12)

* 지역가입자 685만명 중 306만명(44.7%)은 납부예외, 88만명(12.8%)은 장기체납 상태

- 저소득층·여성·지역가입자 등은 무연금·저연금 위험 존재

□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와 세대 형평성 이슈 대두**

- (낮은 신뢰) 국민연금 기금소진, 미래의 보험료 부담 우려로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리서치, '22.8월) >

- ▶ (수급불안) 20~30대 중 미래 연금 수령을 신뢰하는 비율은 30% 미만
- ▶ (가입회피) 가입의무가 없다면, 30~40대 중 55%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

- (세대 형평성) 세대 간 부담-급여 차이로 인한 형평성 이슈 지속
 - 세대 형평성은 당시의 인구·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증가

⇒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 필요, 사각지대 개선과 함께 국민 신뢰 제고도 병행

[2] 기초연금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보장수준 제고 필요

- (노인빈곤 개선) 기초연금으로 인한 노인빈곤율 완화효과*는 높아지고 있으나, 노인빈곤율**(‘21년 37.6%)은 아직 높은 수준

*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폭 : (‘14) 3.4%p → (‘17) 4.5%p → (‘21) 7.3%p

** 노인빈곤율 :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

- (급여 수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기초 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요구 지속 제기

□ 기초연금 수급자 및 연금액 증가 전망

- (노인인구) ‘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노인인구는 약 2배 증가, 2050년에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 수급 전망

* ‘50년에 노인비율은 40%에 도달, 하위 70% 유지 시, 국민의 3명 중 1명은 수급

- (연금액) 기준연금액은 ‘08년 이후 약 4배로 인상(8.4만원 → 32.3만원), 2050년에 현행 대비 약 3배로 증가 예상(물가인상률 감안)

- (재정전망) ‘08년 대비 기초연금 재정은 약 10배 증가(2.2조원 → 22.5조원), 2050년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약 6배 예상(하위 70% 유지 시)

구분	‘08년(기초노령연금)	‘14년(기초연금)	‘23년	‘30년	‘50년	‘70년
노인인구 (비율)	507만명 (10.2%)	628만명 (12.4%)	950만명 (18%)	1,305만명 (26%)	1,900만명 (40%)	1,747만명 (46%)
수급대상	290만명	435만명	665만명	914만명	1,330만명	1,223만명
연금액	8.4만원	20만원	32.3만원	43.9만원	97.2만원	200.5만원
소요재정	2.2조원	6.9조원	22.5조원	39.7조원	125.4조원	238조원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필요

(3)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 가입률이 낮고 소득보장기능 미흡

-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의 53.3%(684만 명, '21.12월)이 가입 중, 연금화 비율 저조**, 수익률도 낮은 수준(10년 연환산 수익률 1.93%)

* 가입대상 :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22년 수급개시(만 55세)계좌 중 계좌 기준 7.1%, 금액 기준 32.6%가 연금수령 선택 [고용부]

- (개인연금)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은 69.6%, 계좌당 연평균 연금수령액(年 295만 원)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역할 제한적('21)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기준('21)

-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률 격차*도 높아,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한계

* (연 근로소득 6천만원 초과) 가입률 70.5% ↔ (6천만원 이하) 가입률 4.3%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21.]

□ 국민연금-사적연금 동시가입 비율은 소득별로 큰 편차

- (동시가입) 국민연금 고소득 가입자의 50% 이상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했으나, 저소득층의 동시 가입률은 15% 미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00만원 이상을 고소득자로, 100만원 미만을 저소득자로 분류

-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동시 수급이 가능하나, 저소득층은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상황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동시가입 비율(2017년) >

구분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퇴직연금*	14.4%	25.8%	39.7%	54%	68.3%
개인연금**	10%	6.9%	8.8%	23.6%	50.7%

*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보다 퇴직금 도입 비율이 높으며, 법 개정('22.4월)에 따라 퇴직금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지급받은 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다는 점 고려 필요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기준

⇒ 퇴직·개인연금은 대상별 특성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필요

1. 그간의 개혁 논의과정

① 1998년 1차 개혁 ~ 2007년 2차 개혁

- (1998년 개혁) 소득대체율 인하(70% → 60%) 및 수급개시연령 상향(60세 → 65세)으로 재정안정화 추진, 재정계산 제도(5년 주기) 도입
- (2003년, 1차 재정계산) 보험료율 15.9% - 소득대체율 50% 제시, 노동계 및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설득 실패
- (2007년 개혁)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추가 인하(60% → 40%),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크레딧 제도, 기초노령연금 도입

② 2007년 개혁 이후

- (2008년, 2차 재정계산)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제시했으나, 사회적 논의 미 진행
 - * (재정계산위) 추가 개혁에 따른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3차 재정계산까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 (2013년, 3차 재정계산) 재정방식에 대한 전문가 이견*에 따라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시
 - * (재정계산위) 부분적립방식 유지 vs 부과방식 전환에 따라 재정안정화 방안 양분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재정방식 논의는 미 진행
- (2018년, 4차 재정계산)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한 전문가 간 이견으로 현행유지안을 포함한 4개안* 제시
 - * ①현행유지, ②현행+기초연금 40만원 ③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④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 경사노위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 운영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

⇒ 소득대체율 인하 등 두 차례 모수개혁으로 재정여건은 개선

⇒ 이후 '모수개혁' 논의 지속, 개혁방향에 대한 이견과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도출 실패 →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 한계

[1~4차 재정계산 및 종합운영계획 주요내용]

□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구분	당시	재정계산위(4.1 공청회)	종합운영계획(10.31 국회제출)
제 도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60%	1안 : 보험료율 19.85% 소득대체율 60% 2안 : 보험료율 15.85% 소득대체율 50% 3안 : 보험료율 11.85%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9% - 소득대체율 50% (재정계산위 2안 유사 스케줄만 차이)
전 망	2047년 소진	-	-

※ 1998년 1차 개혁 : 소득대체율(70 → 60%), 수급연령(60세 → 65세[33년], 5년마다 1세)

□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구분	당시	재정계산위(8.19 공청회)	종합운영계획(10.30 국회제출)
제 도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28)	3차 재정계산까지 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또 다른 개혁은 수급불안 증폭 제도운영 차질 초래) 증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 대책 검토 필요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전 망	2060년 소진	-	-

※ 2007년 2차 개혁 : 소득대체율(60% → '08년 50% → '28년 40%) 및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구분	당시	재정계산위(8.21 공청회)	종합운영계획(10.30 국회제출)
제 도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28)	1안 : 부분적립방식 유지 (최대한 빠른시점 (2017년 前)부터 단계적 보험료 인상) 2안 : 부과방식으로 전환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4차 재정계산 前 재정방식 및 재정 목표 설정 위해 사회적 합의구 운영 ※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재정목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개혁은 국민연금 불신 강화
전 망	2060년 소진	-	-

□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구분	당시	재정계산위(8.17 공청회)	종합운영계획(12.26 국회제출)
제 도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28)	가안 : 보험료율 11% (이후 추가조정), 소득대체율 45% 나안 : 보험료율 13.5% (이후 추가조정), 소득대체율 40%	①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② 1안 + 기초연금 40만원 ③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④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전 망	2057년 소진	-	①안-②안 2057년 소진 ③안 2063년, ④안 2062년 소진

※ **경사노위안** : ①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②보험료 10%-소득대체율 40% ③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2. 5차 재정계산 과정

< 기본 방향 >

- ◆ ①과학적 재정추계와 검증, ②전문가 논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③국회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논의 병행, ④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① 재정추계 및 검증

- (재정추계)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기본가정에 기반한 시산('23.1),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추계결과 발표('23.3)
 - * ▲(구성) 연금, 경제전문가 등 총 12명, ▲(운영) 총 22차례 회의 개최('22.8월~'23.4월)
- (추계검증) '연금수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한국보험계리사회 추계모형 연구용역을 통한 재정추계 검증('23.5.~10.)
 - * ▲(구성) 통계, 보험계리 전문가 등 총 7명, ▲(운영) 총 10차례 회의 개최('23.5~10월)

② 제도개선 논의

- (국민연금 제도)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 가입·급여제도 개선방안, 기초연금 개선방안 등 논의
 - * ▲(구성) 연금전문가 등 총 15명, ▲(운영) 총 22차례 회의 개최('22.11.~'23.10.)
 - 투명한 논의와 정보제공을 위해 재정계산위 상세 회의록 공개
- (기금운용 개선)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통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기금운용정책 개선, 수익률 제고 위한 인프라 강화 등 논의
 - * ▲(구성) 연금전문가 등 총 11명, (운영) 총 14차 회의 개최('22.11.~'23.8.)
 - ** 기금수익률 제고방안 전문가 토론회('23.4.), 전문가 포럼('23.5.) 병행
-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를 통해 기초연금 급여 수준과 대상범위 등 제도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 ▲(구성) 연금전문가 등 총 7명, ▲(운영) 총 10차례 회의 개최('23.2.~9.)

- (사적연금 제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를 통해 퇴직·개인연금 개선방향 및 국민-사적연금 연계과제 등 논의

* (구성) 복지부(1차관)·기재부·교육부·국방부·고용부·인사처·금융위 등, (운영) 3회 개최('23.6.~10.)

⇒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9.1)를 거쳐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 운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최종 자문안 제출(10.19)

<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 주요내용 >

□ 재정계산위원회 발표내용

- ◆ (재정안정) 향후 70년 간 기금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12%, 15%, 18%), 수급개시연령(65세, 68세), 기금수익률(4.5%, 5%, 5.5%)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 제시

< 5차 재정계산위원회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 >

구분	보험료율만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	기금수익률 5%	기금수익률 5.5%	수급개시연령 68세+ 수익률 5%	수급개시연령 68세+ 수익률 5.5%
보험료율 12%	2063년 소진	2069년 소진	2066년 소진	2070년 소진	2073년 소진	2080년 소진
보험료율 15%	2071년 소진	2082년 소진	2076년 소진	2084년 소진	2091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8.4배
보험료율 18%	2082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4.3배	2093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8.7배	2093년 적립배율 12.2배	2093년 적립배율 23.6배

- ◆ (소득보장) 소득대체율 변화(40%, 45%, 50%)에 따른 재정전망을 포함하고, 가입제도 및 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개선방향 등 제시

※ 공청회 당시(9.1), 유지안과 상향안 기술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소득대체율 파트는 제외하고 발표

□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의견(9.1 공청회)

- ◆ (사용자단체) 소득대체율 상향은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 기금수익률 제고 및 거버넌스 개편 필요
- ◆ (근로자단체) 소득대체율 45% 이상 상향, 수급/가입연령 조정은 정년연장 전제될 필요
- ◆ (지역가입자단체) 세대 갈등 해소 및 가입자 신뢰 제고, 공-사 연금 연계 등 필요
- ◆ (전문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중요,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구조개혁 틀 속에서 논의, 보장성 강화는 사각지대 해소, 실질가입기간 확대하는 방안도 존재
 - 재정추계의 객관성 확보 위해 가정변수와 추계모형에 대한 외부검증 진행
- ◆ (청년) 미래세대에 대한 정부의 설득과 개혁의지 중요, 실질 소득보장 제고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 ◆ (언론인) 세대 간 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③ 국회 연금개혁 특위

- (특위)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총 13명 의원), 총 9차례 회의 개최('22.7월~)
- (민간자문위) 국회 특위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운영('22.7월~), 국민연금 개혁방안, 구조개혁 논의 진행
 - (1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개선방안 등 논의('22.10~'23.4, 총 11회)
 - * 연금전문가 총 16인으로 구성

< 1기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경과 >('23.3.29 특위 보고)

- ▲ 국민연금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과 의무가입상한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정합성 ▲지역연금의 개혁 방향과 과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연금개혁안에 대한 이해관계 협의 및 공적 협의 등
- ※ 각 과제별 논의경과 및 향후 검토과제 보고

- (2기)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 진행('23.5~, 총 15차례)
 - * 연금전문가 총 20인으로 구성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구축을 위한 논의과제 >

- ▲ 국민연금 재정방식, ▲급여산식 구조, ▲기금운용구조 개편, ▲기초연금 기능 재정립,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형평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등

⇒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논의범위 확대

⇒ 모수개혁은 구조개혁 논의에 따라 개혁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와 긴밀한 연계 필요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 1기 논의 경과>('22.11월~'23.4월)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주요 쟁점별 현황 및 개편방안 등을 논의하고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과제 검토

검토 과제	주요 내용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연금개혁 필요성	·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현황과 한계,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검토
연금개혁의 방향과 노후소득보장의 비전	· 노후소득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발전 방향 필요
국민연금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 조정	· 소득계층·세대별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수준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상한연령 조정	·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조정 방안 검토 · 고령자 고용,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 필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방안	· 실질 급여수준 인상을 위한 크레딧·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검토 · 제도 개편을 위해 가입실태·사각지대 원인 등을 분석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정합성	·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 검토 · 노인빈곤 완화 효과, 국민연금과 정합성 제고 방안 등 분석 필요
지역연금의 개혁 방향과 과제	· 인사정책적 기능과 공적연금에 부합하는 개편 방안 검토 ·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등 추가 분석 필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 퇴직연금의 현황 및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방안 검토 · 가입·수급 실태, 기능 강화 방안, 제도화 장애 요인 분석 필요
연금개혁안에 대한 이해 관계 협의 및 공적 협의	· 공론화 과정의 원칙과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 · 한국 연금개혁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 개발 필요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 2기 논의 주요내용>('23.5월~)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 진행 중

검토 과제	주요 내용
노후소득보장의 유형과 한국형 체계의 가능성	· 베버리지형·비스마르크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과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한국의 개혁방향 논의
해외 주요 국가 연금개혁 사례	· 일본·독일·영국·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 를 검토하고 지속가능성·소득보장 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개혁방향 논의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공적 협의와 시민학습	· 사회적대화형·정당합의형·정부주도형 세 유형을 검토 · 한국에 적합한 공적 협의 방식 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능 재정립	· 국민연금과의 관계 를 고려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으로 최저보장연금·보편적기초연금 등을 검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할	·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분리·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문제점·대응방안 검토
국민연금 급여구조의 조정	· 기초연금과의 재분배 요소 중복 등을 고려해 균등부분·소득비례 개편 방안 논의
공적연금의 수익분석과 관련 쟁점 검토	· 가상 가입자 및 대표 코호트 대상 수익비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그 함의 및 주의점 등을 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의 개편	· 기금운용 성과 제고를 위해 자산배분 체계 개선, 거버넌스 개편 등 전문성·대표성 강화 방안 검토
국민연금 정부재정 역할(1) : 지급보장과 국고지원	·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를 위한 보험료지원·지급보장, 국고지원 방안을 검토
국민연금 정부재정 역할(2) : 실질 소득대체율 제고	· 단기적 사각지대 완화와 장기적 경제성장을 고려한 크레딧 확대·개편 방안 검토
국민연금 재정방식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수익률·자동조정장치·국고지원 방안의 최적조합 모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 해외 직역연금 개혁사례 및 이를 고려한 직역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구조적 연계 방안 검토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기능 강화	· 현 퇴직연금의 낮은 연금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 방안 논의
노후소득보장과 일자리 : 정년연장, 의무가입연령, 수급개시연령	· 고용환경 등을 고려한 수급가입연령·의무가입상한연령 조정 방안과 노동시장·사회보장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 소득보장, 재정안정	·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수급연령 등의 조정 방안 논의

4 국민 의견 수렴 결과

< 국민 의견 수렴 개요 >

- ◆ (국민참여 백지광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백지광고 실시
* 60일 간 총 2,773건의 국민 의견 접수('22.9.15~11.15)
- ◆ (이해관계자 FGI) 청년, 사용자, 특수고용직, 주부, 예술인 등 총 24회 진행 ('22.8.11 ~ '23.8.29)
* 총 24회 중 청년 대상(대학생, 청년 프리랜서, 청년 농업인 등) 10회 실시
- ◆ (온라인 설문조사) 2,025명(20~59세) 대상 제도 인식, 개혁방향 등 조사 ('23.7.31 ~ 8.11)

[이해관계자 FGI 결과]

① 개혁 범위 및 비전

- (개혁 범위) 인구구조·고용시장의 변화, 他연금제도와의 관계 등을 폭넓게 고려한 구조적 측면의 접근 필요
* 정년 조정 등 고용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제까지 포괄하여 검토 필요
- (개혁비전) 청년층은 “넌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재정목표 등 장기적인 개혁 비전* 제시 요구
* 현재 보험료율-급여구조에서는 지급보장만으로는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②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

- (보험료 조정)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며, 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점진적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 적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제시
- 저소득 가입자, 사용자 등의 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병행 요구
- (보험료 부과기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범위 확대 필요 의견

③ 국민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 (소득대체율) 적정 노후소득 확보, 보험료 인상 부담 측면 등을 고려하여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

-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의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필요

* 불안정한 소득 흐름 특성상, 납부정지 지속·가입기간 손실 등 발생

- (기초연금) ^노인빈곤율 등 고려하여 취약계층에 집중한 기준 연금액 인상, ^전체 노인 대상 지급 등 의견 상이

④ 국민연금 기금운용

- (기금수익률) 수익률 제고 필요성 다수 제시, 구조적 저성장으로 인해 수익률 제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인지도)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나, 운용성과·과정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

* 객관적 정보 부족으로, 기금운용 단기 손실 뉴스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⑤ 국민연금 신뢰 및 형평성

- (국민연금 신뢰) 기금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방식,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 인식 제고 등 필요 의견

- (세대 형평성) 청년세대는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부담 확대*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제기

* 연금개혁이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다수

- 노인 및 중장년층은 그간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세대별 주요 의견 >

- [청년층] "넌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재정 목표 등 장기적인 개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년층]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더라도 보험료 지원제도 등 확대 병행 필요
- [수급자]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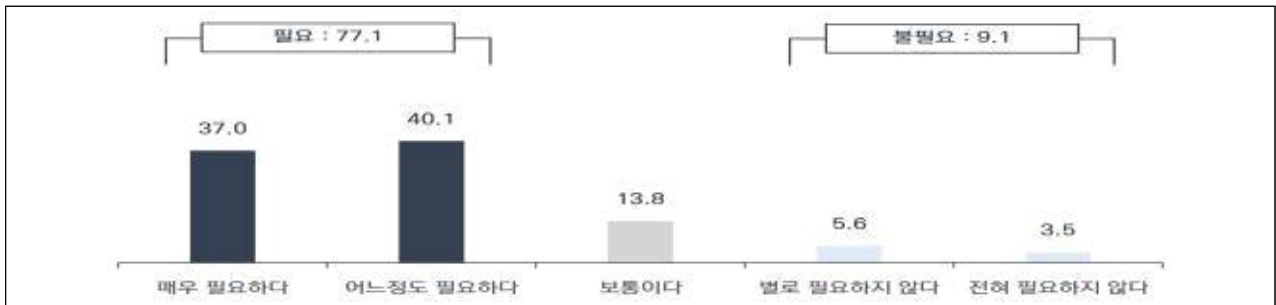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

- ◆ (설문대상)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
- ◆ (설문내용) 국민연금 제도 인식, 개혁필요성, 개혁방향, 기초연금 개편방향 등
- ◆ (설문기간) '23.7.31 ~ 8.11

① 국민연금 제도·기금 인식

- (제도 필요도) 필요 77.1%, 불필요 9.1%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높음



- (연금의 단점) 기금 소진우려 53.6%, 금액 불충분 21.5%, 강제가입 14.9%
 - 50대는 연금액이 적다는 비율이 35.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 (보험료율 대비 연금 수준) 낮음 46.6%, 적정 32.8%, 높음 20.6%
 - 개혁 방향성에서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연결

②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및 개혁방향

- (개혁 필요성) 찬성 81.3%, 특히 20대 찬성 비율이 83.6%로 가장 높음

구분	사례수 (명)	동의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미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잘 모르겠음
전체	(2,025)	81.3%	31.2%	50.1%	14.2%	11.7%	2.5%	4.5%
20대	(428)	83.6%	35.5%	48.1%	11.7%	9.8%	1.9%	4.7%

- (개혁 필요이유)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우려 35.5%,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 34.9%, 미래세대 부담 감소 위해 26.9% 순

* 연령대별 개혁 필요이유 상이(20대 38.3%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 50대의 40.6%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구분	사례수 (명)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우려	국민연금 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전체	(1,646)	26.9%	34.9%	35.5%	2.7%
20대	(358)	31.6%	38.3%	28.2%	2.0%
50대	(475)	26.7%	28.2%	40.6%	4.4%

- (개혁 방향성)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38.0%, '덜 내고 덜 받는 개혁' 23.4%,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 21.0% 순

* 20대에 비해 50대는 더 내고 더받는 개혁 선호가 높고, 덜 내고 덜받는 개혁 선호는 낮은 편

구분	사례수 (명)	보험료 더 내고 급여를 더 받도록	더 내고 급여는 현재 수준 유지	지금보다 덜 내고 덜 받도록	잘 모르겠음
전체	(2,025)	38.0%	21.0%	23.4%	17.6%
20대	(428)	32.2%	20.6%	25.5%	21.7%
50대	(587)	46.5%	19.6%	18.2%	15.7%

- (개혁 시 필요사항) 국민의견 수렴과 참여 35.7%, 개혁논의 및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 33.5%, 지급보장에 대한 메시지 16.2%

구분	사례수 (명)	개혁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잘 모르겠음
전체	(2,025)	33.5%	35.7%	16.2%	10.9%	3.7%
20대	(428)	28.3%	37.1%	16.4%	11.9%	6.3%
50대	(587)	37.8%	36.1%	14.1%	8.7%	3.2%

③ 기초연금 인식 및 개편방향

- (인지도) 알고 있다 63.4%, 모른다 36.6% 순, 특히 '모른다' 응답의 경우 20대 43.7%, 30대는 42.6%로 젊은 층의 제도 인지도가 낮음

구분	사례수 (명)	인지	매우 잘 알고 있다		비인지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체	(2,025)	63.4%	10.2%	53.2%	36.6%	33.8%	2.8%
20대	(428)	56.3%	12.6%	43.7%	43.7%	38.8%	4.9%
30대	(458)	57.4%	9.8%	47.6%	42.6%	38.2%	4.4%

- (제도개편 필요성) 찬성 69.2%, 반대 22.0%
- (개편 방향성) 저소득 노인 한정 급여액 상향 43.0%, 노인 전체로 확대 및 급여액 하향 32.1%, 현행 유지 12.3% 순

⇒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 다만,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세대별 인식 차이 존재

⇒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는 낮은 상태로, 큰 틀의 구조개혁 및 중장기 비전 제시, 투명한 정보공유 등 필요 의견

[이해관계자별 주요 현장 의견]

(1) 청년(대학생, 프리랜서, 농업인, 2030 자문단 등)

구분	주요 의견
제도인식·소통	· 청년층의 보험료 납부 이력, 크레딧 제도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 정보제공 필요 · 통계수치 등 객관적 정보 등에 근거한 국민연금 제도·개혁 관련 교육과 청년층과 적극적 소통 필요
기금소진	· 단편적 정보로 인해 기금 소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적지 않음 ·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함
세대 간 균형	· 개혁 필요성 공감하나 청년층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수용 어려움 · 연령대별로 다양한 수준의 보험료 적용 방안 제안
연금개혁	· 보험료를 조정은 '기여한 만큼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2) 직장 가입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구분	주요의견
연금개혁 제도 지속가능성	· 연금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부담 형평성 고려 필요 · 넓은 시각에서 구조개혁이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등 보험료 수입원을 넓히고, 주부·특수고용직 등 가입 대상을 다각화하여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 플랫폼 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 희망하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부담 완화 필요

(3) 사용자

구분	주요의견
연금 개혁 보험료	· 수용 가능한 보험료를 인상 폭이 크지 않으며, 구조개혁 아닌 모수개혁만 추진 시 국민 공감대 얻기 어려움 · 사용자 입장에서 연금보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며,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필요
기금 운용	· 구조적 저성장, 경기변동 심화 등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

[4] 중장년층

구분	주요의견
기초연금	·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에 부정적 · 소득·자산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 수령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생활에 도움이 되며, 신뢰성 높은 노후보장 제도라고 생각 · 노후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 향후 추납 자격 확보를 위해 18세부터 가입 가능함을 적극 홍보 필요
연금 개혁	· 연금 개혁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공헌에 대한 고려 필요 · 기금운용 성과 제고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완화

[5] 주부(납부에외자, 추납자격자 등)

구분	주요의견
기초연금	· 소득 기준 없는 전소득계층 균일 기초연금 지급 바람직
제도·기금운용	· 편향된 정보로 기금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 존재, 기금 운용 성과, 운용 리스크 관련 객관적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필요
연금 개혁	· 보험료 인상 등 좁은 범위의 모수개혁 보다는 노동시장, 정년 조정 등을 포괄하여 넓은 시각에서 구조개혁 추진 필요 · 일정 수준의 소득대체율이 유지되어야 개혁 효능감 확보 가능 · 보험료를 조정시 직장·지역가입자 각각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이 상이

[6] 예술인

구분	주요의견
국민연금 제도	·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 중에는 소득이 불안정하여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지원 필요
제도인식·소통	·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가입을 하지 않거나 납부유예하는 경우 다수, SNS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 등 홍보

3. 해외의 개혁사례

< 해외 연금개혁 사례 조사 >

◆ 주요국 현장방문* 및 문헌조사를 통해 개혁방향 및 합의과정 검토

* 일본('22.12.18~21), 스웨덴('23.4.20~22), 독일('23.6.7~6.9)

① 개혁 방향 : 구조개혁에 기반한 점진적 개혁 추진

- (스웨덴 1998년) 보험료를 인상하고(13%→18.5%), 확정급여방식에서 기여수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방식으로 변경
 - * 출생연도에 따라 15년에 걸쳐 DB방식에서 DC방식으로 전환
- (독일 2001, 2004년) 보험료를 상한(22%)과 소득대체율 하한(43%) 내에서, 수급개시연령 상향(65세→67세) 및 급여 자동조정 병행
 - 개인연금인 리스터 연금 도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다변화
- (일본 2004, 2012년) 보험료를 상한(18.3%) 내에서 급여를 자동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및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통합
 - * 보험료를 13년에 걸쳐 인상('04년 13.934% → '17년 18.3%, 매년 0.354%p)
 - 연금개혁과 고령자 계속고용 확대(65세 의무, 70세 권고) 병행

② 개혁 과정 : 정부-국회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중요

- (영국 2007년) 초당파적 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 제시, 대국민 토론회**(National Pension Day) 등으로 국민 숙의 실시
 - * 총리·재무부·노동연금부 추천 3인으로 구성('02년)
 - ** 런던·버밍엄·뉴캐슬 등 6개 지역에서 1천여 명 대상 국민 숙의('06년 3월)
 -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범정당적 합의를 함께 형성
- (프랑스 2023년) 정년과 수급연령을 동시 상향(62세 → 64세)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의회 표결 없이 긴급법률제정권을 사용
 - 개혁과정에서 노동계 총파업, 의회 반발 등 사회적 갈등 발생

⇒ 환경변화에 따라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추진, 국회-정부 협력과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 설득 실시

4.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시사점

① 그간의 개혁과정

- (두 차례 모수개혁) '98년, '07년 개혁은 재정개선에 기여했으나, 보험료율 고정 등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전환 한계
- (이후 개혁논의) 재정방식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진전 없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에 초점
 - 개혁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국민 수용성 확보에 한계

② 5차 재정계산 과정

- (국회) 1~4차 재정계산과 달리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운영되어 구조개혁 논의 진행,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으로 논의범위 확대
-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과 실질소득 보장 중심으로 논의, 과거와 달리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조합의 시나리오 제시
 - 청년, 사용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4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FGI를 통해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함을 확인

③ 연금개혁 추진 시 고려사항

- (국민의견) 국민들은 타 연금제도, 인구·고용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반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인구구조 급변)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장래인구추계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밀한 분석 필요
- (해외개혁)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면서,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 도출

⇒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

1. 국민연금 개혁원칙

① [개혁목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혁 추진

② [개혁방향] 구조개혁 논의(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연계하여 국민연금 모수개혁 추진

- (노후소득보장) 노후에 필요한 적정 급여를 보장하고, 고용형태와 가구구성 변화 등에 부합하는 급여제도로 개편
-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세대 간 부담-급여의 형평성과 미래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 (재정안정화)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확립하고, 수지 불균형 개선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 완화
- (기금운용 개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운용정책 강화, 기금운용 인프라 및 자산배분체계 전문성 제고

③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추진

-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추진

2. 국민연금 개혁방향 및 추진과제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든든한 노후 보장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①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②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③ 노령연금 감액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2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① 지급보장 명문화 ② 출산 및 군 크레딧 제도 확대 ③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3 재정 안정화	① 보험료율 인상 ②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③ 국고 지원 확대
4 기금 운용 개선	① 기금수익률 제고 ②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③ 자산배분체계 개선
5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	①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②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③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1. 노후소득보장 강화

①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① 제도 현황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3년 기준 42.5%로, 2028년까지 40%로 조정 중(평균소득자 40년 가입 기준)

* 소득대체율 : 70% → 60%['99년] → 50%['08년] → 40%[~'28년, 매년 0.5%p 인하]

- 가입기간 증가 등으로 수급자 평균 연금액은 꾸준히 개선될 전망

< 신규수급자 보장수준 현황 및 전망 >

구분	2012년	2022년	2030년	2050년	2070년
평균 연금액	42.1만원	68.5만원	88.8만원	126.7만원	192만원
평균 가입기간	15.8년	19.3년	20.3년	24.3년	27.6년

※ 평균 연금액 전망('30년~) : '23년 불변가 기준

② 해외사례

- (보장수준) OECD 평균 공적연금(국민+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42.2%

< 해외 주요국 소득대체율(OECD 2021) >

구분	OECD 평균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소득대체율	42.2%	41.5%	41.3%	32.4%	38.8%
보험료율	18.2%	18.6%	18.5%	18.3%(상한)	11.9%('23)

-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20년)로 기준소득 산정방식의 차이*, 기초연금 제외 등으로 낮게 평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평균소득자(A값, '23년 286만원) 기준으로 산출하나, OECD는 평균임금근로자(AW, '20년 383만원) 기준으로 산출

- (다층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역할을 분담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 확대

* (일본, 캐나다) 보편적인 기초연금 운영, (독일) 개인연금인 리스터 연금 도입 등

③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및 국민의견

- (5차 재정계산위) 소득대체율 유지안(40%)과 상향안(45%, 50%) 대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소득대체율 수준 미 제시

구분	유지 의견	상향 의견
소득 보장	가입기간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 우선, 다층노후소득보장 내실화	사각지대 해소와 다층노후소득보장만으로 한계
재정 안정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안정을 위한 미래세대 부담 확대	보험료 외 국고 등 재원을 다양화하여 충당

- 소득대체율 변화(40%, 45%, 50%)에 따른 재정전망 제시 및 소득대체율 상향 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 필요성 제기

< 재정계산위 : 소득대체율 관련 재정전망 >						
구분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소진시점	2093년
9%	40%	2041년	2055년	2040년 (1,755조원, 43.9%)	26.1% (‘55년)	29.7%
	45%	2041년	2054년	2040년 (1,735조원, 43.4%)	26.9% (‘54년)	33.3%
	50%	2040년	2054년	2039년 (1,718조원, 44.2%)	28.5% (‘54년)	37.0%
12%	40%	2047년	2063년	2046년 (2,464조원, 52.8%)	31.6% (‘63년)	29.7%
	45%	2046년	2061년	2045년 (2,404조원, 52.8%)	33.1% (‘61년)	33.4%
	50%	2045년	2060년	2044년 (2,350조원, 52.9%)	34.6% (‘60년)	37.0%
15%	40%	2053년	2071년	2052년 (3,355조원, 62.7%)	33.7% (‘71년)	29.8%
	45%	2051년	2068년	2050년 (3,185조원, 62.3%)	36.6% (‘68년)	33.4%
	50%	2050년	2065년	2049년 (3,048조원, 61.0%)	38.5% (‘65년)	37.1%

※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 소득대체율은 2025년 일시 인상 가정

-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역할과 함께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명목소득대체율 논의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기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필요
- * 명목소득대체율이 상향되더라도 짧은 가입기간, 사각지대 해소 미흡 시 소득보장효과 제한

- (국민의견) 적정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 의견 다양*, 사용자·근로자단체 간 의견 대립**

* 재정안정 위해 소득대체율 유지 또는 인하 vs 보험료 인상 시 소득대체율 상향 필요

** (사용자) 소득대체율 상향 시, 보험료 부담 증가 vs (근로자) 소득대체율 45% 이상 필요

- 노동시장 불안 등을 고려하여 가입기간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 노후소득보장 제고는 필요하다는 의견

④ 추진방향

-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계속 검토
 -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구체적인 수준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수렴
 -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 필요
- (실질소득 제고) 명목소득대체율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추진

②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1)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① 제도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2,250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85만명이며, 그 중 394만명(57.5%)*은 납부예외, 장기체납 상태인 사각지대에 해당

* 지역가입자 685만명 중 306만명(44.7%)은 납부예외, 88만명(12.8%)은 장기체납 상태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구분	지역가입자 대상		사업장가입자 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
도입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 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사업중단·실업·휴직 등)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6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요건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1,680만원 미만	(재산) 10억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지원 수준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만원)	보험료의 50% (최대 4.6만원/월)	사용자/근로자 부담분 80% (최대 약 18.7만원/월)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제한 없음 (일몰기한 '24.12.31)	최대 36개월

-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 짧은 지원기간(12개월) 등으로 실효성 한계

- 사업장가입자와 비교 시 지역가입자는 평균 가입기간과 최소 가입기간(10년) 충족률이 낮은 상황

<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vs 사업장가입자 >

구분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평균 가입기간	52개월(납부예외 포함)	125개월
최소가입기간(10년) 충족률	15.2%(납부예외 포함)	46.5%

②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및 국민의견

- (5차 재정계산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제안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도 누락된 사각지대 존재, 현행 방식은 '신규' 가입자 확충에 초점
- 농어민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 보험료를 상향 시 추가 부담분에 대한 지원 검토 필요
- (국민의견)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요구

③ 추진방향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 유도
 -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 확대(現 12개월 → 36개월)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개선(안) >

구분	현행	개선안
지원 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사업중단·실업·휴직 등)	납부재개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재산 소득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1,680만원 미만	현행 + 일정소득 수준 이하
지원 수준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만원)	보험료의 50%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최대 36개월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가입 지원

① 제도 현황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91만명, 그 중 69만명이 가입(납부예외 약 6.4만명, 소득 미확인 15만명 추정)
 - 지역가입자(약 53%)가 다수이며, 사업장가입자(약 24%)도 일부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 제공에도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 납부에 있어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불리
- *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 발생분에 대해 사업장과 가입자가 반씩 부담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금액 전부 본인이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추정치) >

(2023.6월 산재보험 입직신고 기준, 단위 : 명)

총계	가입대상						적용 제외자 ²⁾
	계	소득신고			납부 예외	확인중 ¹⁾	
		소계	사업장 ³⁾ 가입자	지역 가입자			
1,031,739	907,768	694,633	216,201	478,432	63,753	149,382	123,971
	100.0%	76.5%	23.8%	52.7%	7.0%	16.5%	

- 1) 공적 자료(국세청, 고용노동부 통계)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실제 소득발생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신고자 혹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기 전인 자
- 2) 타지역, 기초수급자, 18세 미만, 60세 이상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해당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現 노무제공자) 18개 직종 >

- ①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조종사 ③ 학습지·방문강사 ④ 골프장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 설치기사 ⑬ 화물차주 ⑭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⑮ 방과후학교교사 등 ⑯ 관광통역안내사 ⑰ 어린이통학버스기사 ⑱ 건설현장 화물차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 (타 사회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에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하여 고용보험('22.1.)·산재보험 적용('23.7.)

* 사용자와 노무제공자가 보험료 50%씩 부담

②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및 국민의견

- (5차 재정계산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상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고용·산재보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장 가입 전환 검토 및 소득 파악 기반 확충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병행 필요 의견
- (국민의견수렴)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희망, 보험료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부담 완화 요구

③ 추진방향

- (기본방향) 고용·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연금보험료율(9%)이 고용(1.6%)·산재보험(0.5~3.4%)보다는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 고려 필요
- (우선적용) 소득신고방식, 사업주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 파악 및 관리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논의
 - 우선대상이 아닌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 완화
- * (현행) 저소득 납부재개자 → (개선) 100만원 미만의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납부재개자]
- (검토사항) 노무제공자의 특수성, 고용·산재보험 사례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대한 재정의, 부과소득 범위, 보험료 부담비율 등

(3)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일치

① 제도 현황

- 의무가입상한연령은 60세 미만으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유지, 수급개시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연장 중

*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현행 63세)

<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

구분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
의무가입상한연령	60세 미만				
수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60세~64세를 대상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존재하나,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전액 부담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 고령자 고용여건 등에 따라 의무가입상한연령의 조정 필요성 제기

② 해외사례

- 해외 주요국은 의무가입상한연령이 한국에 비해 높고, 가입상한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수급개시연령보다 높게 설정

< 해외 주요국 사례 >

구분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의무가입상한연령	67세 미만	없음	67세 미만	70세 미만	70세 미만
수급개시연령	67세(2031)	64세(2026)	67세(2028)	65세(2025)	65세
법적정년	없음*	없음	없음	60세 (65세 고용확보의무)	없음

* 독일은 법적정년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상을 정년으로 적용

③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추가적인 가입기간 확보여건 조성
 -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알릴 필요
 - 고령자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2033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지역가입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중단 가능
- 다만,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조정할 경우 A값 하락 우려

④ 추진방향

-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 추진
 - 보험료 부담 및 사각지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조정시점은 고령자 계속고용, 수급개시연령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 의무가입상한연령 상향 시, 사업장 및 저소득 가입자 부담완화 방안 등을 병행 검토

[4] 기준소득월액 상한 유지

① 제도 현황

-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부과와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며, 현재 상한액 553만원, 하한액 37만원('22.7월~'23.6월 기준)으로 설정
 - 상·하한액은 A값 증가율에 연동하여 매년 자동 조정, 상한액 가입자 비중은 13% 내외, 하한액 가입자는 약 1% 수준
- 보험료 부과 형평성 및 소득보장 차원에서 상한액을 현실화하자는 의견과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고소득자 혜택만 높인다는 의견 존재

②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 상한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는 후세대 부담을 야기하므로 당분간 현행 제도 유지 의견
 - *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의 시급성은 낮다는 의견
-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합리성 차원에서 상·하한액을 일정비율*에 따라 자동조정하는 방식 제안
 - * 상·하한액을 A값의 일정비율로 정하고, 매년 그 변동에 따라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 검토

③ 추진방향

- 상한액 조정 시 소득보장은 개선되나,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 향후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 조치와 병행하여 상한액 조정방안 검토

③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1)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① 제도 현황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연금액 감액(최대 50%)

* '23년 A값은 286만원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은 월 387만원, 연 4,640만원 수준)

- '22년 기준 12만 8천명 대상 총 1,906억원 감액

- A값 대비 초과 소득이 적은(200만원 미만) 대상자가 대다수(68.2%)를 차지, 감액규모(월 3.2만원)는 적어 실효성 저하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현황 >

초과 금액 (감액비율, %)	총계	~100만원 (5%)	100~200만원 (10%)	200~300만원 (15%)	300~400만원 (20%)	400만원~ (25%)
인원 (명, %)	127,974 (100)	60,934 (47.6)	26,328 (20.6)	12,525 (9.8)	6,490 (5.1)	21,697 (17.0)
금액 (백만원, %)	190,620 (100)	12,060 (6.3)	21,896 (11.5)	23,901 (12.5)	20,786 (10.9)	111,977 (58.7)

- 연금수급권을 제약한다는 인식,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 등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지속 제기

* 유사제도 운영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축소·폐지 추세, OECD도 폐지를 권고('98년)

②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 고령자 노동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금재정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지할 것을 제안

③ 추진방향

-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 감액제도 폐지에 따라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병행

[2]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개선

[유족연금 제도]

- ❶ (제도 현황)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 시,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 (지급현황) '22년 기준, 95만 1천명 총 2조 8,818억원 지급(1인당 월평균 32만원)

- 급여수준 불충분('22.12월 기준 월평균 32만원), 계단식 급여체계* 운영, 청년 입직시기 지연 등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

* 가입기간의 근소한 차이로 유족연금 지급액이 크게 달라짐(가입기간 9년 11개월 기본연금액의 40% vs 10년 기본연금액의 50%)

- ❷ (추진방향)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40~60% → 50~60%) 및 세분화*, 손자녀 연령 상향(19세→25세) 등 보장 수준 및 지급대상 확대 추진

* 11년 미만 50%, 11년부터 1%p 상향, 20년 이상 60%

[부양가족 연금제도]

- ❶ (제도 현황) 노령·장애 수급권자의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연금액 외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가급여액 지급('88년~)

*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 부가 지급('23년 기준 배우자 월 23,610원, 자녀·부모 월 15,730원)

** (지급현황) '22년 기준, 월평균 232만명 529억원 지급(연간 6,343억원), 1인 평균 2.3만원

-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성 제기

* 1인 가구 비율 : 9.0%(1990년) → 31.7%(2020년) [통계청, '20.]

- ❷ (추진방향)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하여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추진

[3] 사망 관련 일시금 제도 합리화

① 제도 현황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납부 기여금 청산 및 장제부조비 지원 목적으로 유족* 외의 친족에게 일시금 지급('95년 도입)

* '생계유지+연령 또는 장애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22년 기준, 15,834명 총 786억원 지급(1인당 평균 496만원, 사망자 기준)

- 가입자 사망 시, 국민연금법상 유족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

- 사망 관련 일시금체계가 복잡하여 제도 개선 요구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 변화를 고려한 지급대상 조정 필요성 제기

< 사망일시금 vs 반환일시금(사망 사유) 제도 비교 >

제도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사망일시금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망자의) 납부한 보험료 +이자 * 단 최종소득월액과 평균소득월액(B값) 중 많은 금액의 4배 한도
반환일시금 (사망 사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연령·장애·생계유지 요건 충족 필요	(사망자의) 납부한 보험료 +이자

② 추진방향

-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단일화하고, 지급대상은 직계존비속에 한정하는 등 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① 지급보장 명문화

① 제도 현황

-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국가의 책무’ 규정, 국가가 존재하는 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급

<국민연금법 >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 존재,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명문화할 필요성 제기

* 20대, 30대 중 미래 연금 수령을 신뢰하는 비율 30% 미만(한국리서치, '22.8.)

② 해외 사례

- 독일은 연간 연금지급을 위한 자금 부족 시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반환
 -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음 해 보험료(상한선 내 조정) 및 급여 조정(제도부양비 반영)을 통해 수지균형을 회복하는 구조

< 독일 사회법전 제6편 공적연금보험 >

제214조(유동성보장) ① 노동자와 직원연금보험이 지급의무를 수행하는데 책임준비금의 유동성자금이 부족한 경우, 연방은 노동자와 직원연금공단에 부족한 만큼의 유동성 보조를 수행한다(연방보증).

② 연방정부가 유동성자원으로 지급한 자금이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동 자금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반환되어야 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논의 경과

- (4차 재정계산위)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찬반 대립 존재
 - (찬성) 현세대 가입자의 불안감 해소 및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 (반대) 연금개혁 동력 약화 및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우려
- (5차 재정계산위) 국민 안심 차원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국회 법안 논의) 지급보장 명문화 법안 논의 시, 현 보험료율·급여수준 보장으로 오해할 수 있어, 개혁동력 약화 우려 등 제기

④ 추진방향

-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 방지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 추진

②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① 제도 현황

- 출산, 군 복무 등 사회적 가치 있는 행동,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 추가 혜택 부여
 - (출산크레딧) 출산 친화 여건 조성 및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아부터 추가 가입기간* 인정('08년 도입)
 - *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 (A값의 100%)
 - (군복무크레딧) 병역의무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08년 도입)
 - *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에 대해 인정 (A값의 50%)
- 해외 주요국에 비해 크레딧 보장수준(인정대상·기간 등)이 낮으며, 수급 개시연령 65세 도달 후 노령연금 수급 시 크레딧이 인정되어 체감 한계
 - 해외 주요국은 크레딧 지원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은 출산크레딧 재원의 30%만 국고로 부담, 70%는 기금으로 충당

< 해외 주요국 출산 크레딧 제도 비교 >

국가	인정 기간	한도	인정시점	인정대상	인정 소득	재원
한국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	50 개월	수급시점	부모 중 1인 또는 군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100%	국고 30% 기금 70%
스웨덴	(양육활동에 대한 보상) 자녀 출생 후 첫 4년	없음	양육활동 시점	부모 중 1인	출산 전/후 소득 차이 등	국고
독일	(양육활동에 대한 보상) 자녀 1명당 3년	없음	양육활동 시점	여성 원칙, 남성도 가능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100%	국고
프랑스	(양육활동에 대한 보상) 자녀 1명당 2년	없음	양육활동 시점	최초 1년은 여성	수급자 생애 평균소득	연기금

< 해외 주요국 군 복무 크레딧 제도 비교 >

국가	급여와 크레딧 병행 여부	인정 기간	인정시점	인정 소득	재원
한국	○	6개월	수급시점	평균소득의 50%	국고
스웨덴	○	전체 복무기간	복무시점	평균소득의 50%	국고
독일	○	6~18개월	복무시점	평균소득의 60%	국고

②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인정(최대 60개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선진국들과 같이 국고지원 100%로 확대 제안
 -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 사전지원방식으로 변경 필요
- (군복무 크레딧) 전체 복무기간에 대해 인정, 군복무 완료시점에 사전지원 방식으로 변경 필요

③ 추진방향

- 출산, 군 복무 등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크레딧 확대 및 사전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책임 강화
 - (출산크레딧)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 인정, 국고부담 비율(現 30%) 확대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기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상한 없음)
인정소득	A값의 100%	A값의 100%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출산 시점
재원	국고 30%, 기금 70%	확대

- (군복무크레딧) 군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기간 확대, 군 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 인정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기간	군복무 기간 6개월 인정	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인정소득	A값의 50%	A값의 50%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군복무 완료시점
재원	국고 100%	국고 100%

③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① 제도 현황

- 재정방식은 급여수준 사전결정 여부에 따라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DC)	
		적립식 확정기여형(FDC)	명목 확정기여형(NDC)
방식	급여수준 미리 확정	보험료 수준 미리 확정	
급여	정해진 급여 지급	납부 보험료 + 운용이자	납부 보험료 + 정부가 정한 이자
장점	소득보장 안정	재정안정, 가입기간과 급여가 연계되어 장기근로 유인	
단점	손실위험은 국가 부담	손실위험은 개인 부담	
채택	한국, 일본, 캐나다 등 20개국	싱가포르(DC), 덴마크(DC)	스웨덴(NDC+DC),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직접적 연계 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
 - 미래세대 보험료가 현 세대의 연금액 지급에 쓰이는 세대 간 이전에 기반

② 해외사례

-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에 직면한 주요국들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 또는 ▲**확정급여방식** 內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
 - (확정기여방식 전환) 스웨덴은 확정급여방식에서 보험료 납부액 등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명목확정기여방식(Nominal DC)**으로 전환

< 스웨덴 명목확정기여방식 전환사례 >

구분	주요내용
급여방식	■ 납부 보험료를 가상 적립액으로 계상+정부가 정한 이자율로 급여 산정 ■ 퇴직시점에 가상 적립액을 기대수명 등으로 나누어 연금화(적립액=연금액)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13%에서 18.5%로 인상
전환시기	■ 15년에 걸쳐 단계적 전환, 연령에 따라 적용여부 및 적용비율 차등

- (확정급여방식 조정) 핀란드·일본·독일 등은 확정급여방식이나, 인구여건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 확정급여방식+자동안정화장치 적용 사례 >

국가	자동안정화장치	작동 방식
핀란드	기대여명계수	■ 기대여명 증가만큼 급여액 조정(생애 총 급여액 고정)
일본	거시경제슬라이드	■ 가입자 수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만큼 급여액 조정
독일	지속가능계수	■ 제도부양비(수급자/가입자)가 증가한 만큼 급여액 조정

③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및 국민의견

- (5차 재정계산위) 확정기여방식 전환과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는 부재
 - 현행 보험료를 9%를 유지한 채 확정기여방식 도입 시, 내는 만큼 받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급감하게 되는 문제 → 보험료를 인상 및 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을 위한 크레딧·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 현재 확정급여방식이 적용되는 수급자 및 기 가입자(기 납부액)에 대한 연금지급 방안 마련 필요
- (국민 의견) 청년세대는 납부한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 지급에 사용되어,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
 - 최소한 내는 만큼 받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

④ 추진방향

-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 (현행) 보험료와 직접적 연계 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
 -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수용성, 해외 개혁사례 등을 고려하여 확정기여방식 도입여부·시점·방식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
- 확정기여방식 논의 시에는 소득보장 약화 방지를 위한 방안도 포함

3. 재정안정화

① 보험료를 인상

① 제도 현황

-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3% → 6% → 9%)은 경과조치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인 인상조치는 없었으며, 1998년 이후 9%로 고정

* (사업장가입자) ▲('88~'92년) 3%, ▲('93~'97년) 6%, ▲('98년~) 9%

(지역가입자) ▲('95.7~'00.6월) 3%, ▲('00.7~'05.6월) 4~8%(매년 1%p), ▲('05.7월~) 9%

- 현행 보험료율은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수지 불균형 심화 및 인구구조 악화로 부과방식비용률** 증가 전망

* 소득대체율 40% 기준 수지균형보험료율 : 19.8%(25년 수급 시)

** 보험료만으로 급여 지급 시 필요 보험료율 : '30년 9.2% → '50년 22.7% → '70년 33.4%

② 해외 사례

- (보험료율 수준) 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로 한국의 약 2배,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보험료율에 해당

* 한국과 보장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은 약 18% 부담

< 해외 주요국 보험료율(OECD 2021) >

구분	OECD 평균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보험료율	18.2%	18.6% (2030년까지 상한 22%)	18.5%	18.3% (상한)	11.9%('23)
소득대체율	42.2%	41.5%	41.3%	32.4%	38.8%

- (재정균형 장치) 재정상태 악화에도 보험료 인상 합의 실패 시,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균형 장치 운영(캐나다 등)

< 재정균형장치 사례 >

국가	조건	재정균형 조치
캐나다 (부분적립)	향후 75년간 재정유지를 위한 최저기여율 > 현행기여율	연방·지방정부 간 재정안정화 합의 실패 시, → 추후 재정계산(3년)까지 급여동결 및 최저기여율-현행기여율 격차의 50% 증액
핀란드 (부과방식)	연금의 재원이 차년도 예상 지출 규모의 20% 이하인 경우	기금이 차년도 예상 지출의 20% 이상 유지하도록 기여율 자동 조정

③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및 국민의견

- (5차 재정계산위) 2021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에 기반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 방안(2093년 기금유지 목표) 논의

- 보험료율 12%, 15%, 18%를 수급개시연령(65세, 68세) 및 기금 수익률(4.5%, 5%, 5.5%)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
※ 소득대체율 변화(40%, 45%, 50%)에 따른 재정전망 별도 포함
- 구체적 대안은 미 제시, 세대 간 형평성 논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

< 5차 재정계산위원회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 >

구분	보험료율만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	기금수익률 5%	기금수익률 5.5%	수급개시연령 68세+수익률 5%	수급개시연령 68세+수익률 5.5%
보험료율 12%	2063년 소진	2069년 소진	2066년 소진	2070년 소진	2073년 소진	2080년 소진
보험료율 15%	2071년 소진	2082년 소진	2076년 소진	2084년 소진	2091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8.4배
보험료율 18%	2082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4.3배	2093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8.7배	2093년 적립배율 12.2배	2093년 적립배율 23.6배

- (국민의견) 청년세대는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요구, 보험료율 인상 시, 연령별로 단계적 인상* 필요성 제안

*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

- 저소득 가입자, 중장년층 등은 보험료 부담 우려, 경영계는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필요 의견

④ 추진방향

-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
-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추진

-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 검토, 전체 사회보험료 및 조세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국민부담 수준 논의 필요

* 통계청은 2023년 장래인구추계 '23년 12월에 발표 예정

< 재정계산위 재정안정화방안 18개 시나리오 >

(1) 보험료율 12% 인상

구분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2%	2047년	2063년	2046년 (2,464조원, 52.8%)	31.6% (‘63년)	29.7%
+수급연령 68세	2052년	2069년	2051년 (2,791조원, 53.4%)	30.1% (‘69년)	27.6%
+기금수익률 0.5%p 상향	2049년	2066년	2048년 (2,841조원, 58.1%)	32.7% (‘66년)	29.7%
+기금수익률 1%p 상향	2052년	2070년	2051년 (3,378조원, 64.6%)	33.5% (‘70년)	29.7%
+수급연령 68세 +기금수익률 0.5%p 상향	2055년	2073년	2054년 (3,388조원, 60.5%)	31.1% (‘73년)	27.6%
+수급연령 68세 +기금수익률 1%p 상향	2060년	2080년	2059년 (4,339조원, 69.4%)	31.7% (‘80년)	27.6%

*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 수급연령은 2033년 65세 도달 후 5년마다 1세씩 조정, 기금수익률은 평균 4.5%에서 2023년부터 제고

(2) 보험료율 15% 인상

구분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5%	2053년	2071년	2052년 (3,355조원, 62.7%)	33.7% (‘71년)	29.8%
+수급연령 68세	2061년	2082년	2060년 (4,305조원, 67.4%)	31.5% (‘82년)	27.6%
+기금수익률 0.5%p 상향	2057년	2076년	2056년 (4,079조원, 69.7%)	34.8% (‘76년)	29.8%
+기금수익률 1%p 상향	2062년	2084년	2061년 (5,234조원, 80.2%)	33.8% (‘84년)	29.8%
+수급연령 68세 +기금수익률 0.5%p 상향	2067년	2091년	2066년 (5,649조원, 78.3%)	28.4% (‘91년)	27.6%
+수급연령 68세 +기금수익률 1%p 상향	2083년	2093년 (적립배율 8.4배)	2082년 (8,797조원, 89.3%)	-	27.6%

(3) 보험료율 18% 인상

구분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8%	2060년	2082년	2059년 (4,533조원, 72.5%)	34.6% (‘82년)	29.8%
+수급연령 68세	2073년	2093년 (적립배율 4.3배)	2072년 (6,638조원, 81.9%)	-	27.6%
+기금수익률 0.5%p 상향	2066년	2093년	2065년 (5,859조원, 82.8%)	-	29.8%
+기금수익률 1%p 상향	-	2093년 (적립배율 8.7배)	2093년 (9,683조원, 78.0%)	-	29.8%
+수급연령 68세 +기금수익률 0.5%p 상향	-	2093년 (적립배율 12.2배)	2093년 (12,703조원, 102.3%)	-	27.6%
+수급연령 68세 +기금수익률 1%p 상향	-	2093년 (적립배율 23.6배)	2093년 (25,097조원, 202.1%)	-	27.6%

②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① 제도 현황

-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2023년 기준)이며,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2033년 65세 도달 예정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일정 >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 기대여명은 5년마다 약 1세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의무가입상한 연령은 60세 미만, 법적정년은 60세(이상)로 규정

* (기대여명) '22년 84.3세 → '33년 86.3세 → '45년 88.2세 → '50년 88.9세 → '70년 91.2세

② 해외사례

- 해외 주요국은 고령화 속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추진,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정년도 함께 조정하는 경향*

* 일본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미국/영국은 정년 폐지

< 해외 주요국 사례 >

구분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수급개시연령	67세(2031)	64세(2026)	67세(2028)	65세(2025)	65세
의무가입상한연령	67세 미만	없음	67세 미만	70세 미만	70세 미만
법적정년	없음*	없음	없음	60세 (65세 고용확보의무)	없음

* 독일은 법적정년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상을 정년으로 적용

③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및 국민의견

- (5차 재정계산위) 기대여명 증가 전망을 고려할 때,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급개시연령을 65세 도달 이후 68세*로 추가 조정 필요

*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 연장(2038년 66세 → 2043년 67세 → 2048년 68세)

- 다만,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고령자 고용정책 개선과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 수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5차 재정계산위) >

구분	65세(현행, 2033년 도달)	68세(2048년 도달)
보험료율 9%	2055년 소진	2059년 소진
보험료율 12%	2063년 소진	2069년 소진
보험료율 15%	2071년 소진	2082년 소진
보험료율 18%	2082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4.3배

- (국민의견) 수급개시연령 상향 시 소득공백 우려로 인해 계속고용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기

④ 추진방향

-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공백 확대를 감안하여,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

- 수급개시연령 조정은 전 국민의 수급액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령자 계속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확보 필요
- 수급개시연령만 늦출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 필요

* 수급개시연령 상향시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 '13년 40.5만명 → '18년 58.1만명 → '23년 85.6만명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함께 논의

3 국고 지원 확대

1 제도 현황

-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총 1조 1,075억 원*('23년)으로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관리운영비 등에 활용

* (복지부) 관리운영비 100억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382억원, 출산크레딧 5억원,
(고용부) 두루누리 지원 8,477억원, 실업크레딧 35억원 (농림부 등) 농어민 지원 1,766억원 등

-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효과적인 국고 지원 방식 논의 필요

2 해외사례

- (기본원칙)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되,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른 지원제도는 국고로 부담

* 소득재분배를 위한 지원, 출산·양육 등에 대한 보상, 저연금자 보충급여 등

- (지원방식) ①크레딧·보험료 지원, ②사회정책적 급여, ③연금재정
직접지원, ④기초연금 재정지원으로 구분 가능

- 주로 크레딧·보험료 지원, 사회정책적 급여, 기초연금에 국고를 지원,
국민연금 재정에 직접 지원하는 사례도 존재

< 해외 주요국 국고 지원 사례 >

국가 (보험료율)	국민연금				④기초연금 재정지원
	①		②	③	
	크레딧 인정	보험료 지원	사회정책적 급여	재정 직접 지원	
스웨덴 (18.5%)	○ (양육, 군복무 등)	X	○ (저연금자 보충연금)	X	○ (100% 국고, 선별)
일본 (18.3%)	○ (출산, 양육)	X	X	X	○ (50% 국고, 보편)
독일 (18.6%)	○ (출산, 양육)	○ (저소득층)	○ (저연금자 보충연금 등)	○ (재정의 약 24%)	X
스위스 (10.1%)	X	X	X	○ (노령유족연금 지출의 약 20%)	X

③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 및 국민의견

- (5차 재정계산위) 보험료 인상과 함께 연금재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접적인 국고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필요 의견	신중 의견
■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이 소진되기 전 선제적·한정적인 국고지원 필요 → 기금수익 증대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재분배 기능 등 감안하여 국고 지원	■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제도의 수지균형과 가입자의 책임성 확보 선행 필요 →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 전가 ■ 조세도 국민부담인 만큼 사회 전체의 부담에 대한 고려 및 사회적 합의 필요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국고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 (국민의견) 청년세대는 기금 소진 이후, 조세를 통한 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세대 간 공정성 측면 문제 제기

④ 추진방향

- 국민연금의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을 대신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고 지원 확대 필요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등

- 기초연금을 전액 국고+지방비로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직접 재정지원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독일은 국고 부담금이 보험료율(18.6%)에 연동, 가입자 책임과 국가책임을 함께 제고

- 향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기초연금 역할 재정립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확대방안 추가 논의

4. 기금운용 개선

① 기금수익률 제고

① 제도 현황

- (기금수익 역할) 국민연금 재정에 기금수익은 주요한 재원으로 기능
 - 국민연금 기금조성에 그간 보험료 수입은 762조원(59%), 기금수익은 528조원(41%) 차지 ('23.5월말 기준)

조 성 1,289.9조원		지 출 316.0조원	
762.3(연금보험료 등)		304.8(연금급여)	기금적립금 973.9조원
		11.2(관리운영비 등)	
527.6(운용수익금)			972.7(금융부문)
			1.2(복지·기타)

- (목표수익률)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존을 위해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로 목표수익률을 설정
 - 목표수익률을 반영하여 5년 단위 기금운용전략(전략적 자산배분) 수립
 - *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평균 기금운용수익률('23~'93년) 4.5%로 설정
- (운용목표) 현재 재정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기금운용의 장기전략 및 목표수익률이 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채 설정

② 5차 재정계산위원회 등 논의내용

- (5차 재정계산위) 보험료율-기금수익 간 적정 역할에 대해 논의, 기금수익률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대, 구체적 역할에는 의견 다양*
 - * ▲적극적 기금운용을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수적 접근 필요
- (기금의 역할)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0.5%p, 1%p 제고하는 방안 제시

< 수익률 제고에 따른 재정전망(5차 재정계산위) >

구분	기금수익률 4.5% (5차 재정계산 전망)	기금수익률 5%	기금수익률 5.5%
보험료율 9%	2055년 소진	2057년 소진	2060년 소진
보험료율 12%	2063년 소진	2066년 소진	2070년 소진
보험료율 15%	2071년 소진	2076년 소진	2084년 소진
보험료율 18%	2082년 소진	2093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8.7배

- (고려사항) 기금수익률 제고 시 위험자산 증가로 운용위험*이 높아지므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 필요

* 현재 기금의 연간 손실확률은 약 25%(통계적으로 4년에 1번 마이너스 수익률 발생 가능)

- (5차 기금운용발전위*)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배분체계 개편, ^해외사무소 확대 등 운용인프라 강화 등 제안

* 기금운용발전위는 총 14회 개최, 그 외 전문가 토론회(23.4월) 및 전문가 포럼(23.5월) 등 병행

③ 추진방향

- (기금수익률 제고)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완화를 위해 1%p 이상 추가 수익 제고

-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고려한 기금의 목표 수익률 설정 및 달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 (제도·운용 개편) 투자 다변화,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및 자산배분 체계 개편 추진

-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 추진

- 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자산배분 역량 강화 등 추진

- (정보공개) 위험자산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는 운용위험, 기금손실 확률 등 정확한 정보공개와 소통 추진

②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① 제도 현황

- (운용조직) 보험료 부과·가입자 관리 등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內에 기금 투자·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기금운용본부*)을 설치
 - ^기금운용·집행,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감사 등 기금운용 관련 모든 기능은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 * 기금운용본부 인력 정원은 435명, 기금규모는 약 974조원('23.5월말 기준)
- (해외·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는 투자지역·대상 다변화 등 분산투자 효과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기금운용성과 제고 가능
 - 해외투자종합계획('20~'24) 수립 등을 통해 해외·대체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아직 그 비중은 주요 연기금 대비 낮은 편
- * (대체투자 비중, '22년말 추정) (한국) 16.4%, (캐) 59%, (네) 33.2%
- ** (해외투자 비중, '21년) (한국) 43.8%, (캐) 84%, (네) 96%
- (운용인력) 국민연금의 1인당 운용규모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캐나다(0.3조)·네덜란드(0.7조)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부족
 - 전문성 높은 우수인력 유치 및 운용인력 확충 등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를 통해, 투자 다변화를 위한 운용기반 마련 필요

② 추진방향

[투자 다변화]

- (해외·대체투자 확대) '24~'28 중기자산배분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약 60% 수준으로 확대
- '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사모대출 등 중위험·중수익의 성격을 가지는 신규 자산군 유연화·다변화

- (해외투자 역량강화)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투자 결정과 관련한 책임자급 인력 파견 등 기능 강화
 - * 3개소(뉴욕, 런던, 싱가포르) 운영 중 → '24년 1개소 추가
- 美 샌프란시스코*를 우선 추진하고, 추후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도·유럽 등 추가 설치
 - * 美 서부 금융중심지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現 뉴욕사무소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IT·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성장 분야 투자기회 확보
- (운용여건 보완) 기금본부의 지역적 한계 보완 및 금융시장 네트워크 교류 강화 등을 위해 기금운용 전용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신설 운영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개요 >

- ◇ (추진배경) 투자정보 및 대상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출장업무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
- ◇ (규모) '23년 30석 (서울 남부지역본부 소재)
- ◇ (향후계획)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여, 규모 확대 등 검토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 (인력확보) 기금규모 증가('28. 1,280조), 대체투자 확대('28. 196조)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력 증원
 - * 기금본부 조직 컨설팅 결과('23, Willis Towers Watson), '27년까지 493명 증원 필요
→ '24년 해외증권·대체투자분야 운용인력 50명 증원 반영('24년 운용직 정원 415명)
-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투자전략 전문가 영입
- (조직개편)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 신설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 개편
- (보수수준 개선)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한 전문운용인력 보수수준 합리화로 전문성 높은 인력의 근무 유인 강화
 -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대체투자 성과평가체계 변경, 절대수익률 반영 검토 등 성과보상체계 개편 추진

③ 자산배분체계 개편

① 제도 현황

-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인 전략적 자산배분을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위) 의결을 통해 매년 수립

* (기금위 구성) 당연직(복지부장관(위원장), 기재·산업·농림·고용부차관, 공단 이사장) 6, 사용자 3, 근로자 3, 지역가입자 6, 전문가 2 (총 20명)

-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자산군별* 목표 비중 결정

*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 (참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제8조(전략적 자산배분) ① 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하여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향후 5년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략적 자산배분은 수익률 대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나, 장기적 기금 운용목표 없이 5년 단위의 계획을 매년 결정

* 전략적 자산배분의 수익률 기여도는 약 90% 내외 ('19~'21년 기준)

- 또한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주식·채권·대체)만 투자가 가능한 경직적인 구조로, 적극적인 투자 다변화·유연화에 한계

* '19년부터 '전술적 운용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자산군(멀티에셋 등)에 투자 중이나, 그 규모는 약 7.6조원 수준으로 작은 편

② 해외사례

- 주요 해외 연기금의 경우, 운용 효율성 확보 및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비중을 정하는 방법보다 factor(위험) 등을 기반으로 정하는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 도입 추세

* 장기적으로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위험수준과 기대수익률을 단순화된 2개 자산군 조합(주식·채권)으로 나타내어,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기능

< 주요 연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비교 >

구분	CPPI (캐나다 국민연금)	GPIF (일본 국민연금)	AP3 (스웨덴 국민연금)	NZSF (뉴질랜드 기초연금)	GIC (싱가포르 국부펀드)
도입년도	2006년	2014년	2001년	2010년	2013년
시계	75년	25년	40년 이상	20년 이상	-
구성비중	해외주식 85% 국내채권 15%	주식 50% 채권 50%	주식 55% 채권 45%	해외주식 75% 국내주식 5% 해외채권 20%	해외주식 65% 해외채권 35%

③ 추진방향

-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장기적 기금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 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 마련
- 수익률 제고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수준 설정
- * 기금운용본부 조직 역량 등을 고려하여 도입·실행

< 중장기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

현행	개선(안)	비고
-	(장기, 20년) 기준 포트폴리오 장기목표수익률 및 위험선호도 제시 기금운용위원회	신규 도입
↓	↓	
(중기, 5년) 전략적 자산배분 기금운용위원회	(중기, 5년) 전략적 자산배분 기준 포트폴리오 대비 초과수익 추구 기금운용본부(기금운용위원회와 연계)	권한 조정
↓	↓	
(단기, 1년) 전술적 자산배분 기금운용본부	(단기, 1년)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 포트폴리오 대비 초과수익 추구 기금운용본부	현행 유지

- (거버넌스·성과평가) 기준포트폴리오 및 자산배분 수립 주체·절차 등을 마련하고, 거버넌스에 부합하는 성과평가체계 개편안 검토
- (기금 영향력) 기금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 국내투자 비중 및 중장기 투자전략 등 검토
- * '23.5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GDP 대비 45%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①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① 제도 현황

- (대상범위)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를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설정, 수급자 수는 증가 전망

< 노인인구·기초연금 수급자 및 재정소요 전망 >

(단위: 만 명, 조 원)

구분		'23년	'25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노인인구		950	1,058	1,305	1,724	1,900	1,868	1,747
기초연금 수급자		665	740	914	1,207	1,330	1,307	1,223
재정 소요	현행 유지	22.5	27.0	39.7	76.9	125.4	179.4	238
	40만원 인상		30.0	43.7	85.6	140.8	202.2	269

※ ▲ 현행 유지 : '23년 32.3만원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 40만원 인상 : '25년 인상 후 물가상승률 반영 등

- (급여수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4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인 20만원으로 시작하여 '23년 현재 32.3만원(A값의 11.3%)
 -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빈곤율은 지속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

*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13) 46.3% → ('17) 42.3% → ('21) 37.6%

② 추진방향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40만원)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
 - * 최빈곤층은 생계급여('23년 최대 62.3만원)를 통해 빈곤 완화 및 노후소득보장 도모
 - 구체적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

< 국정과제 >

-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②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1) 퇴직연금 활성화

① 제도 현황 *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 (가입대상) '05년 도입 이후 근로자·사업장 가입이 확대되는 추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으로 소규모 가입장 가입 확대 추진

* 30인 이하 사업장의 납부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사업주 부담금 지원('21년 도입)

- 가입대상자 중 53.3%(684만 명)가 가입했으나, 전체 사업장 도입률은 27%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입률 저조('21)

* 근로자 가입률: ('17) 50.2% → ('21) 53.3%, 사업장 도입률: ('17) 27.2% → ('21) 27.1%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구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도입률('21)	10.6	33.1	57.1	73.0	80.4	87.0	91.4

- (연금수령) '22년 적립금은 335.9조 원으로(전년 대비 13.6% 증가), 지속 성장 중이며,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도 지속 증가

- 하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투자해 평균 수익률*이 낮고, 연금수령 비율도 계좌 기준 7.1%, 금액 기준 32.6%에 불과('22.12)

* 연간수익률: ('18) 1.01% → ('20) 2.58% → ('22) 0.02%

② 추진방향

- (도입 확대) 영세사업장의 조기 도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활성화 지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 (인지도 제고) 퇴직연금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홍보 강화

(2) 개인연금 활성화

① 제도 현황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기준

- (가입·유지)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가입 확대 유도 중이나, 낮은 가입률과 높은 중도인출 비율 등으로 인해 연금화 한계
 - 근로자 기준* 전체 가입률은 12.1%로, 고소득 근로자(6천만원 초과) 가입률은 70.5%이나 저소득 근로자(6천만원 이하)는 4.3%에 불과('21)
 - * 국세통계연보상 근로소득이 파악되는 근로자(19,495,359명) 대상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가입률
 - 가입자의 약 30.4%는 세제혜택 요건(5년 계좌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43.6%가 10년 내 중도 해지 추정('21)
- (연금 수령) 연금액이 낮고 수령기간이 짧아 고령화 대응에 한계
 - 연금화된 계좌당 연평균 수령액은 295만원(월 평균 25만원), 전체 계약의 53.3%가 연수령액 200만원 이하('21)

< 연도별 연금저축 수령액 규모 >

구분		'17	'18	'19	'20	'21
연금화된 금액(조원)		2.13	2.64	3.06	3.53	4.04
연수령액 (%)	~200만원	52.3	51.3	51.9	53.8	53.3
	~500만원	28.9	29.3	29.0	28.1	29.3
	~1,200만원	16.4	17.1	16.9	15.9	15.4
	1,200만원~	2.4	2.4	2.2	2.2	2.1
평균(만원)		299	308	302	293	295

② 추진방향

- 개인연금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가입·유지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수익률 제고 등 운영개선 추진

③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① 제도 현황

- 외형상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나,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체적인 소득보장현황 파악 한계
 - 제도 간 적정 기능 분담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 선행 필요

② 논의경과

- (범정부 협의) 인구위기대응TF*, 관계부처 협의체** 등 범정부 협의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
 - * (인구위기대응TF, '22.7월)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및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논의 (복지부·고용부·농림부·통계청 등)
 -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 '23.6월) 각 연금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논의 등 2차례 개최(복지부·고용부·기재부·교육부·국방부·인사처·금융위)
- (포괄적 연금통계) 공·사적연금* 적립금 규모, 수급자·가입자 수 및 노후소득보장 현황 파악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구축(통계청)
 - *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③ 추진방향

- (현황 분석) 포괄적 연금통계(통계청)와 연계하여 가구유형·지역 등에 따른 가입·수급률, 사각지대 현황 등 분석
- (적정 기능 분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각 제도의 적정 역할과 목표,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한 범부처 협의 지속

◆ 재정투입이 필요한 개혁과제는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

□ 국회 제출

-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 제출

□ 국회와 협업을 통해 공론화 추진

- (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하여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논의 추진
- (정부)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 제공, 지원단 운영 등 국회 논의 뒷받침
 - 새로운 인구추계* 반영한 재정전망 등 근거보완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 * 통계청은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23년 12월에 발표 예정

< 해외 사례 >

- (스웨덴) 국회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논의*(1984년~1998년),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수용성 제고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진행
 - * 정당추천 등을 통해 연금개혁위('84년), 준비위('91년), 실행위('94년~'98년) 구성
 - 14년에 걸쳐 기존의 연금개혁 논의가 연속적으로 진행
- (영국) 소규모·초당파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안 논의('02~'06), 의회-정부가 함께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시민의견 수렴('06~)
 - * 총리·재무부·노동연금부 추천 3인으로 '연금위원회' 구성('02.)
 - '전 국민 연금토론', '전 국민 연금의 날' 등 일반 대중 대상의 숙의적 협의 추진, 의회·정부가 함께 경영계·노동계·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 형성 노력
 - 개혁 논의과정에서 정권교체('10)가 있었으나 개혁 완결('14)

참고1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과제 목록(안)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세부과제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①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② 가입자의 실질 소득 제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특고종사자 등 가입 지원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일치
		기준소득월액 상한 유지
	③ 노령연금 감액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폐지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 합리화
2.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① 지급보장 명문화	지급보장 명문화
	②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③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3. 재정 안정화	① 보험료를 인상	보험료를 인상
	②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③ 국고지원 확대	국고지원 확대
4. 기금운용 개선	① 기금수익률 제고	기금수익률 제고
	② 투자다변화 및 기금운용인프라 강화	투자다변화 및 기금운용인프라 강화
	③ 자산배분체계 개선	자산배분체계 개선
5. 다층노후 소득보장 정립	①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②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
		개인연금 활성화
	③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1. 추진 개요

- (조사대상) 전국 20~59세 성인 남녀 중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
* 연령·성·지역별 비례할당 추출, 미가입자 제외(답변 신뢰도 제고 취지)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23.7.31~8.11 (12일간)
- (조사내용)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에 대한 국민 인식·신뢰 수준, 제도개선 방안, 기초연금 개선방안 등 14개 문항

2. 주요 조사결과(요약)

① 노후준비 관련

- ① (준비 수준) 부족 66.4%(매우 부족 18.7%, 부족한 편 47.7%),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됨 29.2%, 충분 4.4% 順
- (준비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76.7%, 아직 노후준비를 할 때가 아님 18.8%, 경제적으로 여유 있음 4.1% 順
- ② (준비 방식) 대부분 연령대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대는 예·적금·주식 등 금융상품 비율*이 가장 높음
* (전체) 공적연금 80.1%, 금융상품 65.5% / (20대) 공적연금 68.7%, 금융상품 69.1%

< 노후준비 방식 연령별 응답표(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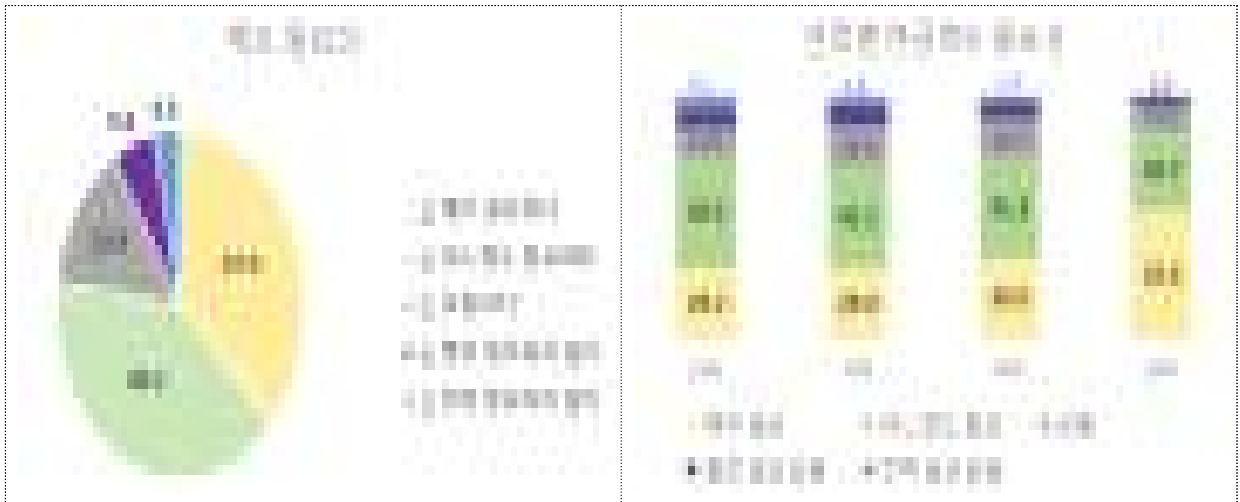


② 국민연금 제도 · 기금 인식

- ① (제도 필요성) 필요 77.1%, 불필요 9.1%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높으며, 특히 50대의 경우 필요 86.3%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필요성 인식 확대 경향

* 주로 학생인 20대에 비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30대의 필요성 인식이 더 낮음 (20대 74.5% vs 30대 71.1%)

< 국민연금 제도 필요도 >



- ② (제도의 단점) 기금 소진우려 53.6%, 금액 불충분 21.5%, 강제가입 14.9% 順 50대는 연금액이 적다는 비율이 35.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 국민연금 단점 >



- ③ (보험료를 대비 연금 수준) 낮음 46.6%, 적정 32.8%, 높음 20.6% 順,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남

* ('낮음' 선택비중) 20대 12.9%, 30대 14.2%, 40대 19.6%, 50대 35.3%

③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및 개혁방향

- ① (개혁 필요성) 개혁 찬성 81.3%, 반대 14.2%로 조사, 특히 20대의 찬성* 비율이 83.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음

* 직종별로는 학생(87.8%), 자영업·프리랜서(84.7%), 영업·서비스직(82.7%)의 찬성 비율 높음

<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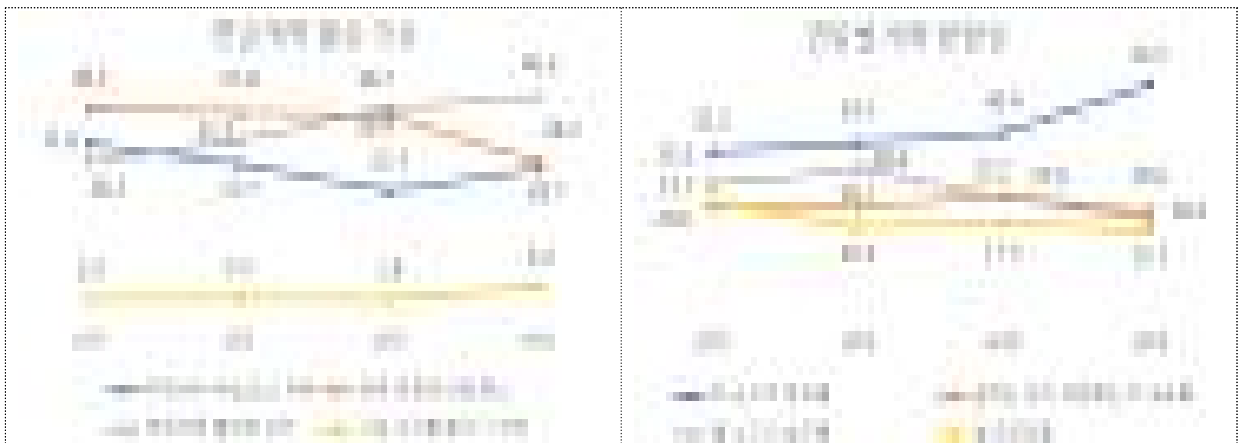


- ② (개혁 필요이유) 향후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해소 35.5%, 장래 연금 수급에 대한 확신 34.9%, 미래세대 부담 감소 26.9% 順

* 20·30대는 '장래 연금수급에 대한 확신' / 40·50대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해소' 항목을 개혁 필요사유로 주로 선택

- ③ (개혁 방향성) 보험료 더 내고 급여도 더 받도록 38.0%, 덜 내고 덜 받도록 23.4%, 더 내고 현재 급여수준 유지 21.0%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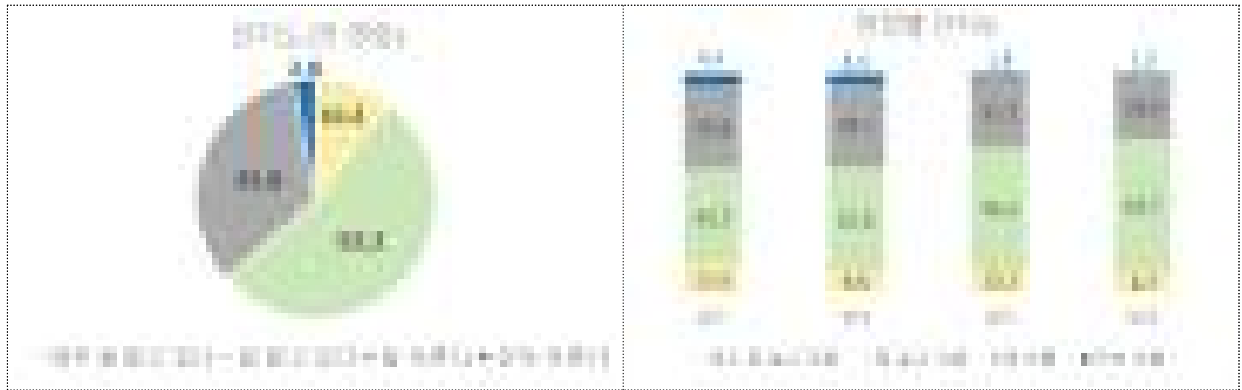
< 국민연금 개혁 이유 및 방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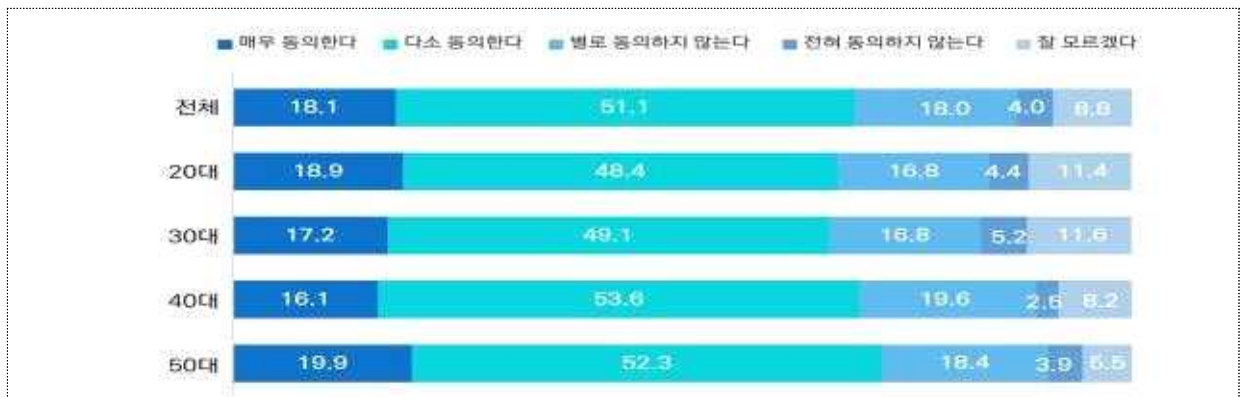
- ④ (개혁 시 필요사항) 국민의견 수렴과 참여 35.7%, 개혁논의 및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 33.5%, 지급보장에 대한 메시지 16.2% 順

④ 기초연금 인식 및 개편방향

- ① (인지도) 알고 있다 63.4%, 모른다 36.6%로 조사, 특히 20대(43.7%) 및 30대(42.6%)로 젊은 층의 제도 인지도 낮음



- ② (개편 필요성) 동의 69.2%(매우 동의 18.1%, 다소 동의 51.1%), 반대 22.0%(매우 비동의 4.0%, 다소 비동의 18.0%)로 전 연령에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③ (개편 방향성) 저소득 노인에 한정, 급여액 상향 43.0%, 노인 전체로 대상 확대, 급여액 하향 32.1%, 현행 유지 12.3% 順

*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층에서 지급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 하고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홍보·소통 추진 개요

□ 연령별·지역별 등 현장 소통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FGI) 및 TV방송·온라인(SNS)을 활용 국민연금 제도 인식 제고

① **(FGI 의견수렴)** 세분화된 대상별(청년, 근로자, 가입자, 사용자 등) FGI 24회 추진

- 특히, 청년층(청년농업인, 대학생,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집중하여 국민연금제도 및 개혁에 대한 의견 확인

* 총 24회 FGI 간담회 중 청년 농업인 등 청년 대상 10회 실시

② **(방송출연)** 연합뉴스TV 생방송 인터뷰(장관, '23.9.2. 제1차관, '23.8.25.), KTV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특징점, 기금운용 현황 등 소개

* 제1차관, 총 8회 진행('23.7.10.~9.11.)

③ **(찾아가는 현장 소통)**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현장밀착형 국민연금 교육

- 350여개 기관·단체 총 13,700여 명 교육, 7,783명 설문** 참여('23.9.30. 누적기준)

* 고교·대학교 121개, 사업장 156개, 군부대 9개 등

** (교육 전/후 효과) ▲국민연금 필요하다 88.7→93.3%,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 36.2→62.4%, ▲기금 소진 후 못받는다 21.2→8.5%

④ **(전문가 포럼·기자 아카데미)** 연금제도 전문가 포럼의 관련 자료 공개 및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연금제도·개혁 관련 기자 이해도 제고

* (전문가 포럼) 5회(10회~14회) 대외 생중계

(기자단 아카데미) 주요 일간지 기자 등 130여 명 대상(총 4회)

⑤ **(청년층 맞춤형 소통)** 인플루언서 유튜브, SNS 참여 이벤트,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한 청년층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청년층 인기 유튜버 '정훈남' 협업 영상 제작(45만 회 조회), 온라인 이벤트 추진(11회), 30만 구독 뉴스레터 광고매체를 활용한 국민연금 뉴스레터 광고 이메일링 서비스

주요 추진 사항

① 연금개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FGI)

- (주요 내용)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연금제도의 개혁안 검토에 앞서, 세분화된 대상 집단별(청년, 근로자, 가입자, 사용자, 전문가 등) FGI 추진

- 특히, 청년층에 집중하여 국민연금제도 이해도 제고 및 의견 확인

* 총 24회 FGI 중 청년 대상 10회 실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FGI) 추진현황 >

일 시	대 상	일 시	대 상
'22.8.11.	사용자, 지역가입자(장관)	'23.5.24.	한국외국어대 대학생(제1차관)
'22.8.17.	전문가(인구정책실장)	'23.5.31.	배달 종사자(인구정책실장)
'22.8.17.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아카데미	'23.6.9.	청년 프리랜서(장관)
'22.8.24.	근로자(장관)	'23.6.12.	학생, 직장인 등 국회토론회
'22.11.23.	백지광고 의견제시 청년(제1차관)	'23.6.27.	중소기업 경영인(인구정책실장)
'22.12.1.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아카데미	'23.7.6.	중장년층(국민연금정책과장)
'22.12.12.	2030 청년(제1차관)	'23.7.10.	청년 농업인(제1차관)
'23.4.11.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아카데미	'23.7.21.	주부(인구정책실장)
'23.4.20.	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제1차관)	'23.7.25.	예술인(인구정책실장)
'23.5.3.	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연금정책국장)	'23.8.1.	연금 수급자(국민연금정책과장)
'23.5.11.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인구정책실장)	'23.8.10.	소상공인(연금정책국장)
'23.5.16.	LG전자 사무직 노조(제1차관)	'23.8.29.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제1차관)

- (매체 홍보) 보도자료, 유튜브 영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등을 통해 의견수렴 현황 및 주요 현장 의견 대외 소통

- (언론보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련 언론보도 다수

* 복지부, 청년들과 연금 간담회...“국민연금 필요하나 신뢰 높여야” ('22.11.23, 연합뉴스 YTN 등)

- (온라인 미디어) 보건복지부 유튜브(복파리TV)* 영상 게시, 연금공단 블로그 게시, 카드뉴스 홍보

*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 담다-한국외국어대 토크 콘서트 영상 ▲청년 농업인 간담회 영상

② TV 방송 출연 인터뷰

- (주요 내용)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 사적연금 대비 특징점, 기금운용 성과 소개 등 국민연금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 TV 생방송 홍보
- (연합뉴스TV) 연금개혁 원칙·연금개혁 방향(장관, '23.9.2.), 국민연금제도 특징점, 기금운용 성과, 해외연금개혁 사례(제1차관, '23.8.25.)
- (KTV) '생방송 대한민국' 인터뷰(제1차관, 매주 월, 10:35~10:55), 8회 시리즈('23.7.10.~9.11.)

※ KTV 국민연금 시리즈 회차별 주제

회차	주제	주요내용
1 (7.10)	국민연금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 및 도입배경 ○ 국민연금 제도 개요
2 (7.24)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금개혁	○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추진과정 ○ 재정계산 실시 목적, 5차 추계 결과 ○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원칙과 전제조건
3 (7.31)	해외 연금개혁 동향 및 시사점	○ 영국,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 연금개혁 과정 및 시사점
4 (8.8)	기초연금과 노후소득보장체계	○ 기초연금 제도 현황 및 향후계획 ○ 기준중위소득 및 노인일자리
5 (8.14)	국민연금 제도 혜택과 장점	○ 물가 연동, 평생 지급 등 국민연금 제도 장점 ○ 크레딧, 보험료 지원 제도 및 급여 종류 소개 ○ 대국민 홍보·소통
6 (8.28)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및 발전방향	○ 기금운용의 중요성 및 수익률 제고방안 ○ 기금운용체계 현황 및 주요 쟁점
7 (9.4)	국민연금 현장목소리	○ 24회에 걸친 현장검증인터뷰(FGI) 통한 청년, 소상공인, 주부, 예술인, 중소기업 경영인 등의 의견수렴 결과
8 (9.11)	국민연금제도 핵심 요점	○ 국민연금 필요성 및 특징점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연금개혁 해외사례

③ 찾아가는 현장 소통

①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설명회

- 학교·직장·군부대 등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실시('23.4.~9월, 350여 개소 총 13,700여 명)
- (학생) 전국 고교·대학 홈페이지에 카드뉴스 게시, 인프라 활용 홍보, 강의 시간 할애 대면교육 실시
* 전국 397개 대학에 교육신청 안내, 121개 고교·대학 5,689명
- (직장인) 사업장 사내 인프라 활용 안내 및 강의 희망 사업장은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설명회 실시(Q&A식 강의, 관심이 높은 재테크 내용 병행)
* 전국 300인 이상 3,273개 사업장에 교육신청 안내, 156개 사업장 4,914명
- (군장병) 지역 부대에 방문, 장병 교육시간에 연금제도와 사회진출 시 재무설계 등 병행 교육* 및 육군 훈련소 입영문화제 참여 * 전국 9개소 859명
- (자영업자 등) 직능단체 등을 찾아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 및 개혁 필요성 등 안내, 보험료 지원사업 등 홍보(64개소 2,273명)

※ 교육 전/후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23.9.30. 기준)

(전/후 효과 비교)	▲ 국민연금 필요하다 88.7% → 93.3% (4.6%p ↑),
	▲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 36.2% → 62.4% (26.2%p ↑)
	▲ 기금 소진 후 못받는다 21.2% → 8.5% (12.7%p ↓)

② 지역밀착형 소통 강화

- (대학·지역축제 등) 전국대학·지역 축제 등 참여, 홍보부스 운영하며 내연금알아보기, OX퀴즈, 리플릿 배부 등 이벤트 실시(전국 145개 행사 참여)
- (생활밀착형 홍보)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버스정보시스템(BIS), 지하철 PDP 등 생활 인프라 활용 홍보(전국 8,806개소 송출)
- (지역 오피니언 리더 간담회) 지방의회,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유관기관 등 지역별 간담회 실시(의정부, 양주 등 전국 286회 실시)

④ 전문가 포럼·기자단 아카데미

①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생중계

- (배경) 연금특위 출범('22.7.22), 재정추계위원회 논의('22.8.31.) 등에 따라 연금개혁 진행 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
- (주요내용) 국민연금 주요 전문가로 포럼단 구성,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과정과 발제문을 대외 공개

일시	주제	발제자
'22.11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현황과 쟁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22.12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22.12월	국민연금 자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	박명호(홍익대), 전영준(한양대)
'23. 1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	최영준 교수, 문현경 부연구위원
'23. 5월	국민연금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향	이효섭(자본시장 연구원), 신왕건 박사

② 기자단 아카데미

-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대상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이해도 제고 및 향후 객관적 언론 보도 기반 마련

연번	일시	주요내용	강사*	참석자	주관
1	'22.8.17.(수) 15:00~20:00	-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 기초연금 제도 및 현황 - 기금운용 체계 및 운용현황	최옥금 이동섭 한성희	(복지부)인구정책실장 등 (기자) 37명 (공단)연금제도연구실장 등	복지부
2	'22.12.1.(목) 15:00~18:00	- 기금운용의 이해 - 해외연금개혁의 사례와 시사점 - 연금개혁 및 기금운용의 주요쟁점	손 협	(복지부)연금정책국장 등 (공단) 대외협력단장 등	복지부
3	'23.4.11.(화) 11:00~12:00	- 국민연금제도의 이해 - 기금운용의 이해 - 기초연금제도의 이해	국민연금 정책과장 등	(복지부)연금정책국장 등 (기자) 28명 (공단) 언론차장 등	복지부
4	'23.6.29.(목) 10:40~12:00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 기금수익률 이해 및 현황 -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원칙	김혜진 이승근	(기자) 32명 (공단)기획이사 등	공단

*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 기금운용본부 전략실장 등

⑤ 뉴미디어 기반 청년 맞춤형 홍보

① 인플루언서 협업 유튜브 제작

- 청년층에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국민연금과 제도를 소개
 - 게임 유튜버 '정훈남'(구독자 34만명) 협업 8bit 게임 콘셉트 영상 제작 (총 45만 회 조회수, 23.9월)(‘23.3.20.)
 - * 제5차 종합운영계획 수립 과정을 게임 미션 수행 형식으로 소개
 - 경제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구독자 167만) 협업 국민연금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총 3.8만 회 조회수, 23.9월)(‘22.11.25.)
 - * 노후 소득에서 국민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 내 다양한 급여제도 소개

② 뉴스레터 광고 이메일링 서비스

- 청년층의 구독자가 많은 경제뉴스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혜택, 기금 안정성 등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내용 전달
 - 구독자 30만 명 보유 '어피티' 업체 통해, 약 30만 건 이메일 발송(‘23.8.1.)
 - * 뉴스레터를 읽은 구독자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담은 회신 메일을 보내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제고

③ 국민연금 인식제고를 위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 (목적)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2023년 3월에 실시한 제5차 재정계산에 대해 알리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23.7.5.)
 - * '연금개혁' 관련 퀴즈(2문제)를 모두 맞힌 선착순 3만명에게 이모티콘 무료 발송
⇒ 이벤트 시작 3시간 만에 조기 소진(3만명 퀴즈풀이 및 다운로드)

④ 다양한 SNS 활용 소통 강화

- (SNS 활용 소통)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공단 SNS 및 '국민연금 온에어' 활용한 이벤트 실시(11회)
 - '연금개혁 4행시(조회수 2만여 회)', '빈칸 채우기(조회수 1만여 회)' 등 추진
 - 웹진 발간에 따른 관심유도 위해 독자의 목소리 및 퀴즈풀기 이벤트 등

⑥ 대국민 경청이벤트(백지광고)

- ① (추진 배경)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제5차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백지 광고' 형태의 대국민 의견수렴 추진*

* (일시) 2022.9.15.(목)~2022.11.15.(화)

- ② (추진 결과) 연금개혁·기금·기초연금 등에 대한 2,773건의 의견* 접수

* 연금개혁(1,043건)·제도(485건)·기금(335건) 관련 분야에 대하여 연금개혁 촉구, 제도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③ (주요 내용)

- (연령별 분석) 50대의 참여가 975건으로 가장 많아,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 40대(645건), 60대 이상(506건), 30대(481건), 10~20대(166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되어,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음

- (의견 분석) 2,419건* 중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3건(43.1%)으로 가장 많았음

* 접수된 2,773건의 의견 중 단순문의·기호 등을 제외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제안이 다수 접수,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인

- 기초연금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지급대상 변경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통합 등 의견도 일부 제시

-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제도 관련 485건(20%), 기금 관련 335건(13.9%)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

- 국민연금의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거나 유족연금의 수준을 높이는 등 여러 제도 분야의 개선 요구 및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요청 의견 다수 접수

[일본의 연금제도 현황 및 주요 개혁사례]

□ 개요 및 현황

- 20세~60세 미만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과 20세~70세 미만 근로자가 의무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구성

구분	국민연금(기초연금)	후생연금
가입대상	전 국민 대상 (20세 이상~60세 미만)	민간근로자와 공무원 등 피용자 (20세 이상~70세 미만 원칙)
보험료율	월 16,590엔(22.4~23.3 기준) * 피용자, 무소득배우자 등은 후생연금에서 부담(피용자는 정년까지)	18.3% (사용자1/2, 피용자1/2) * 2017년 이후 고정
급여수준 (‘21.12)	평균 월 56,435엔(약54만원)	평균 월 102,505엔(약 99만원) * 1인 기초+후생 합산
수급개시 연령·요건	65세 (최소 가입기간 10년)	64세(‘25년 65세)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 후생연금 1개월 이상)

□ 주요 개혁사례

- (2004년 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①보험료 인상, ②국민연금 국고부담 확대, ③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 추진
 -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후에는 고정(후생연금 18.3%, 국민연금 16,900엔[‘04년 불변개)으로 인상)
 - (국고부담) 국민연금 국고부담비율 1/3에서 1/2로 인상(‘09년~)
 - (자동안정화장치)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으로 연금액을 기대수명, 출산율 등에 따라 조정(ex. 기대수명 ↑ ⇒ 월 연금액 ↓)
- (2012년 개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 등
 - * 공무원·사학연금 보험료율(단계적으로 인상)과 제도를 후생연금에 통일
- (고령자 고용정책 개선) 연금개혁과 함께 공무원 정년 연장(60→65세), 민간 분야 고령자 고용 확대(65세 의무, 70세 권고) 추진

[스웨덴의 연금제도 현황 및 주요 개혁사례]

□ 개요 및 현황

- 근로자와 자영자 등 모든 소득활동자가 의무 가입하는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IP)과 **프리미엄연금**(Premium Pension: PP) 등 운영

* 3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비례연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저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GP) 지급(평균 월 21만 원[SEK 1,684])

구분	소득비례연금(IP)	프리미엄연금(PP)
가입대상	민간근로자와 공무원 등 피용자, 자영자	
보험료율	16%	2.5%
	(근로자는 고용주와 절반부담 /자영자는 전액 본인부담)	
급여수준	평균 월 105.7만원 (SEK 8,623, '22)	평균 월 13.2만원 (SEK 1,078, '22)
급여결정 방식	명목확정기여방식(NDC)	확정기여방식(DC)
수급개시 연령·요건	63세('26년 64세)	63세('26년부터 64세)

□ 주요 개혁사례

- (1998년 개혁) 고령화·저성장 및 기존 제도의 고급여 문제로 인해
 - ①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 ②자동안정화장치 도입, ③보험료율 인상 등 추진
 -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DB)에서 명목확정기여방식(NDC)과 적립식 확정기여방식(FDC)을 결합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자산과 부채비율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 조정
 - (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율을 13%(소득비례연금)에서 18.5%(소득비례연금+개인연금)로 인상
- (2021년 제도개선) 장기가입이력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보충제도 도입(월 최대 SEK 600 지급)

[독일의 연금제도 현황 및 주요 개혁사례]

□ 개요 및 현황

- 모든 임금근로자, 일부 자영업자, 광부 등이 의무가입하는 법정 연금보험 및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 등 운영

구분	법정연금보험(국민연금)	리스터연금
가입대상	수급연령 이전 모든 근로자, 일부 자영업자 등	법정연금·농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배우자 포함)
보험료율	18.6% ('22)	4%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0~90% 지원)
급여수준	평균 월 약 140만원(982유로, '21) * '지속성계수' 적용을 통해 급여수준자동조정	-
수급개시 연령·요건	65세('31년 67세) (최소 가입기간 5년)	62세

□ 주요 개혁사례

- (2001년) ①리스터연금, ②보험료율 상한·급여수준 보장규정 등 도입·마련
 - (리스터연금 도입)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춰 재정안정화를 도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사적연금 강화
 - (보험료율 상한마련·급여수준 보장) 2030년까지 보험료율 22% 이하로 유지 및 소득대체율 67% 이상을 유지하도록 보장
- (2004년) ①지속성계수 도입, ②수급연령 상향, ③보험료율·소득 대체율 설정범위 명문화 등 추진
 - (지속성계수 도입) 제도부양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를 반영한 지속성계수를 도입하여 급여수준 자동조정기능 강화
 - (수급연령 상향) 완전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인상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범위 명문화) 보험료율 22%(~'30)를 상한선으로, 소득대체율은 43%(~'3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명문화

[영국의 연금제도 현황 및 주요 개혁사례]

□ 개요 및 현황

- 일정소득 이상의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nSP)과 근로자가 준의무가입하는 기업연금 등 운영

구분	신국가연금(nSP)	기업연금
가입대상	16세 이상~67세 미만 일정 소득 이상의 전 국민	22세 이상~67세 미만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보험료율	가입대상·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예) 고소득 근로자 : 본인 13.25%, 고용주 15.05%	최소보험료율 8% (근로자 5%+사용자 3%) * 근로자 5% 중 1%p는 세제혜택으로 환급
급여수준	최대 주 £185.15 (약 28.8만 원)(‘22)	평균 주 약 30.1만원(£192)(‘20~‘21)
수급개시 연령·요건	66세(‘28년 67세) (최소 가입기간 : 10년)	66세

□ 주요 개혁사례

- (2007년) ①공적 소득비례연금(S2P)의 소득대체율 하향·정액연금화,
②수급개시연령 상향계획 수립, ③국민보험 크레딧 제공 대상 확대 등
- (2008년) ①기초연금(BSP) 연동방식 변경을 통한 실질가치 보장*,
②개인계좌제도(NEST) 도입 등 추진
- (2014년) ①공적연금의 일원화(신국가연금으로 통합), ②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26~‘28년 67세), ③기업연금의 준 보편화 등 추진

□ 개혁 과정

- 소규모 초당파적 연금위원회를 구성(총리·재무부·노동연금부 추천 3인),
향후 합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실 제시에 집중
- 연금위원회의 분석을 기반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방향을 담은
백서 발간, 광범위한 범위의 이해당사자·시민 의견 수렴
 - 의회·정부(노동연금부)와 경영계·노동계·연금산업·시민운동단체 등
이해당사자와의 공식·비공식적 협의로 합의 형성 노력
 - ‘전국민 연금토론’, ‘전국민 연금의 날’ 등 일반 대중 대상의
숙의적 협의도 함께 추진

[프랑스의 연금제도 현황 및 주요 개혁사례]

□ 개요 및 현황

-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소득비례연금 존재, 직종별로 총 42개의 연금*이 각기 다른 산정방식과 별도 기금으로 운영

* 대상자별 일반연금(민간 근로자), 특별연금(공공 근로자), 자영자연금 등으로 구분

구분	일반연금	특별연금 (SNCF, RATP, IEG 등 12개 연금)
가입대상	민간 근로자 (가입대상 인구의 약 65%)	국가공무원, 국영철도, 광부 등
보험료율	15.45% (근로자 6.9%, 사용자 8.55%)	연기금별로 다름 예) 국영철도 23.18% (근로자 9.33%, 고용주 13.85%)
급여수준	월 약 215만원(1,532유로, '18) * 기초+보충연금 합계	월 약 342만원(2,500유로, '20) (모든 특별연금 평균 연금액)
수급개시 연령·요건	62세 (최소 가입기간 3개월)	62세(최소 가입기간 15년) * 단 노동 강도와 피로가 높은 특수직종은 50~57세에 수급 가능)

□ 주요 개혁사례(마크롱 정부)

- (배경) 42개의 복잡한 연금제도, 공정성 및 노동 유연성 저하, 고령화 심화 등으로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 (내용) ①수급개시연령 상향(62세→64세), ②완전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 연장(42년→43년) 등 추진
 - (과정) ①기제도 통합·정년연장 없는 수급연령 상향 추진했으나 중단, ②기재선 후 개혁안 일부 수정, 정년-수급연령 동시 상향 등 추진
 - (1기: '17.5~) 2019년 11월 정부안을 발표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노동계 총파업('19.12.) 및 코로나 대유행으로 논의 중단('20년 초~)
 - (2기: '22.5~) 정부안 발표('23.1.), 상원 통과(3.16) 후 긴급법률제정권(하원 표결없이 입법 가능) 발동(3.16), 하원에서 발의한 총리 불신임안 부결(3.20)
- ⇒ 헌법위원회 합헌 결정 후 대통령 승인·공포(4.14), 9월부터 시행